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리셋 ! 국가정보원 정책 토론회

일시 | 2017.3.7.(수)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진선미 의원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 | 국회 시민정치포럼 /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TF

■ 토론회 일정

구 분	비 고
식전 행사	⊗ 사회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인사말
발제 및 토론	⊗ 사회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 (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 발제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석범 : 변호사 (전 국정원 법제관) - 최승호 : 뉴스타파 앵커(영화 ‘자백’ 감독) - 김용민 : 변호사 (유우성사건 변호인) - 김종훈 : 국회의원 (무소속) - 박주민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질의 응답 및 토론	전체토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 선 미

국정원 개혁, 대한민국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입니다.

촛불광장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외침은 대한민국 개혁의 빔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수 정권 9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개혁을 논의하는 토론회의 개최는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를 주최함에 있어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국정원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도 같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드러났듯 이명박 정부 내내 이어진 비상식적인 중복몰이와 북풍,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색깔공세 등 국정원은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특정 정권을 위한 비상식적인 활

동을 해왔습니다.

201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2013년 NLL 대화록 무단 공개와 박원순 서울 시장 음해 공작 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2015년 해킹 프로그램 도입 사건, 2016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정황과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까지.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국정원 개혁은 더는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 개혁의 시작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특정 정권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정원 개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2017년 새롭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제 .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김당 기자

(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정권교체가
국정원 최고의
개혁이다

◻ ◯ ◯ ◯ ◻

〈시크릿 파일 국정원〉저자
김당(전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정권교체가
국정원 최고의
개혁이다

◻ ◯ ◯ ◯ ◻

〈시크릿 파일 국정원〉저자
김당(전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권력2인자

무소불위

음지에서 양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익명의 열정

권력2인자

권력2인자

무소불위

음지에서 양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익명의 열정



권력2인자

무소불위

음지에서 양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익명의 열정



권력2인자

무소불위

음지에서 양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익명의 열정

익명의 열정

권력2인자

무소불위

음지에서 양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익명의 열정



권력2인자

무소불위

음지에서 양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익명의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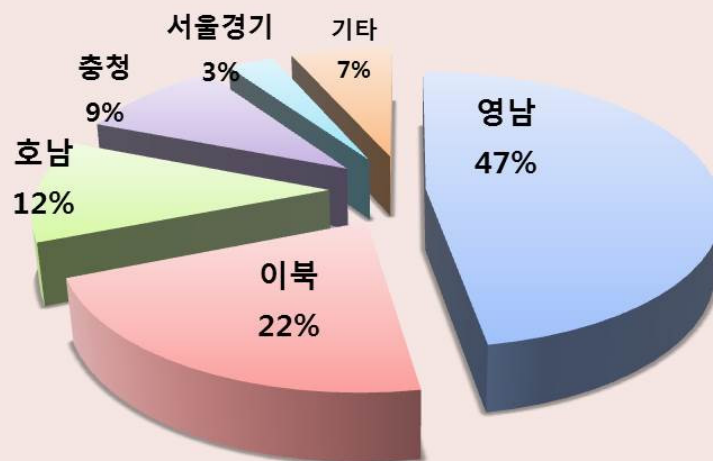
익명의 열정

기억할 핵심 키워드
작은 정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익명의 유혹

역대 국정원장

	성명	재임기간	
1대	김종필	61.5-63.1	1년8개월
2대	김용순	63.1-63.2	2개월
3대	김재춘	63.2-63.7	5개월
4대	김형욱	63.7-69.10	6년3개월
5대	김계원	69.10-70.12	1년2개월
6대	이후락	70.12-73.12	3년
7대	신직수	73.12-76.12	3년
8대	김재규	76.12-79.10	2년10개월
9대	이희성	79.10-79.12	2개월
직무대행	윤일균	79.12-80.4	4개월
10대	전두환	80.4-80.7	3개월
11대	유학성	80.7-82.6	1년11개월
12대	노신영	82.6-85.2	2년8개월
13대	장세동	85.2-87.5	2년3개월
14대	안무혁	87.5-88.5	1년
15대	배명인	88.5-88.12	7개월
16대	박세직	88.12-89.7	7개월
17대	서동권	89.7-92.3	2년8개월
18대	이상연	92.3-92.10	6개월
19대	이현우	92.10-93.2	4개월
20대	김덕	93.2-94.12	1년10개월
21대	권영해	94.12-98.3	3년2개월
22대	이중찬	98.3-99.5	1년3개월
23대	천용택	99.5-99.12	7개월
24대	임동원	99.12-01.3	1년3개월
25대	신건	01.3-03.4	2년1개월
26대	고영구	03.4-05.7	2년3개월
27대	김승규	05.7-06.11	1년4개월
28대	김만복	06.11-08.2	1년3개월
29대	김성호	08.3-09.2	11개월
30대	원세훈	09.2-13.3	4년1개월
31대	남재준	13.3-14.5	1년2개월
32대	이병기	14.7-15.3	7개월
33대	이병호	15.3-현재	

역대 원장의 출신지(재임기간 비율)



영남>이북>호남>충청

부장-원장 퇴임 후에는? (CIA vs KCIA)



김형욱: 6년 3개월 재임(역대 최장기간),
망명 후 회고록 -> 비명횡사



조지 테닛: 7년 재임(역대 두번째), 9.11혼장
회고록<폭풍의 한가운데서> -> 돈방석



1997년 대선과 안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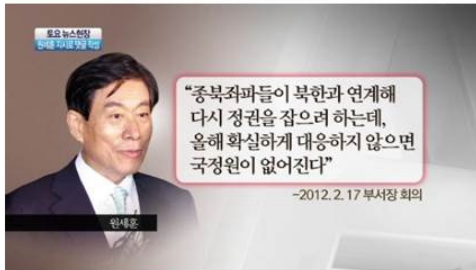
황장엽 망명, 오익제 월북, 편지공세, 비디오 테이프 공세,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



권영해와 손충무의 김대중 X파일,
2억원 제공 및 '사재기' 와 1천부 파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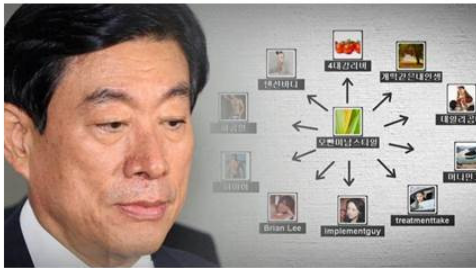


2012년 대선과 국정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진선미 의원의 폭로



사법처리 현재 진행형,

해킹툴 구매 폭로와 직원 자살
=> 국정원 개혁 특위(2013년)

“ 권영해 VS 원세훈의 닮은 점 ”

구분	권영해 안기부장	원세훈 국정원장
출신지/학력	경북 경주 육사 15기	경북 영주 서울대 법학과
재임 기간	1994년 12월 ~ 1998년 3월	2009년 2월 ~ 2013년 3월
대통령 관계	YS 하나회 숙청에 관여 교회 장로 인연	MB 서울시장 당시 부시장 역임
불법비리 혐의	개인비리 안기부법·선거법 위반 (북풍, 총풍, 세풍 사건)	개인비리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댓글, 해킹 사건)
사법처리 결과	징역 2년(황령) 징역 8개월(세풍) 징역 5년 (북풍, 선거·안기부법 위반)	징역 1년 2개월 (알선수재) 징역 3년 (선거·국정원법 위반)

역대급 최장 재임+개인 비리

정권 안보와 국가안보 동일시 :
귀향 구전홍보 공작(호남 제외)
VS 사이버 댓글 공작

정보기관 사유화 : <김대중 X파일>
손충무 2억원 VS 어버이연합 용역
데모 5억원(전경련-베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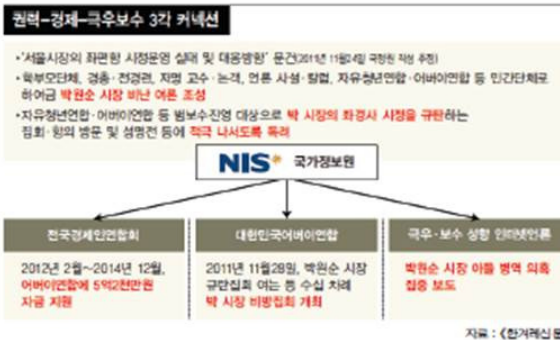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어땠나

김대중 정부 : 98지선, 00총선, 02지선, 02대선 관리(4회)
노무현 정부 : 04년 총선, 06년 지선, 07년 대선 관리(3회)

“한나라당이 사설탐정팀까지
운용했으나(정치개입 동향을)
단 한 건도 적발 못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다”
(2000. 6 정보위)



국정원은 3각 커넥션의 사령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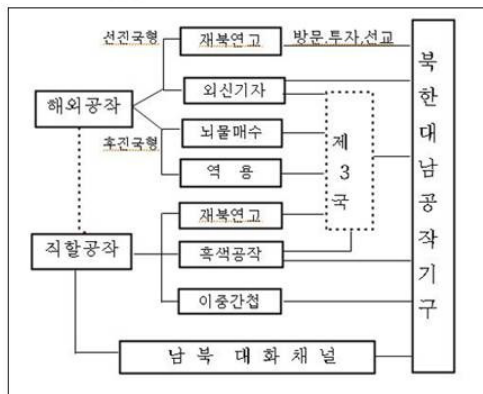


권력-재계-극우보수 커넥션과 박원순 제압문건(2011. 6~11)
전경련-어버이연합(벤엘재단)-극우 인터넷매체 커넥션
현재의 박근혜-최순실 미르-K재단도 증거인멸까지 판박이

중간 결론

- 재임기간이 길수록 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은 이다

대북 공작 유형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기능
(정보, 방첩-수사, 공작)

제3국은 일본(재일교포)과
중국(탈북자, 보따리장수) 등

WHITE, GREY, BLACK

스파이
출신
작가들



① 京郷新聞 前교수 25년 暗殺 震曲시정 進一步 中共 日見解수락

국가배상액 132억원

② 京郷新聞 高교實業人위장 間諜網다진 反維新 心포섭활동

③ 東亞日報 北傀間諜 4개網 16명 검거

④ 朝鮮日報 僑胞 弑國유학생의도 魔手

⑤ 南山新聞 獎忠壇유세 열기와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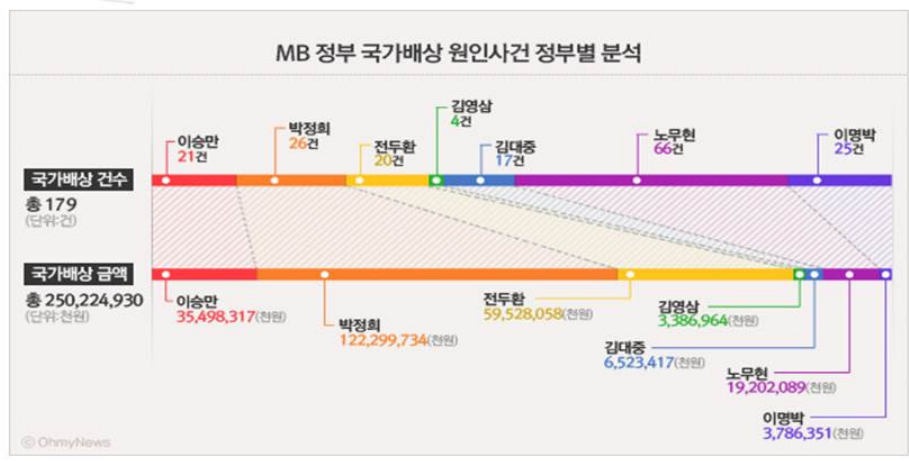
⑥ 休戰線인질 彈法島間諜團 7명 검거

⑦ 韓日新聞 간첩 51명

역대 간첩단 사건

① 송씨일가 간첩망 29명 ② 재일교포 실업인 간첩망
 ③ 재일동포 간첩(김병진) ④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⑤ 서승-서준식 교포유학생 간첩단(71년 대선 전)
 ⑥ 미법도 남북어부 간첩 ⑦ 진도 가족간첩단(51억)

역대 정부 국가배상금



역대 정부 원인별 국가배상 건수와 배상액 비교 : 박정희>전두환>이승만 정부
 공권력 범죄 총액 2,500억원 : 박정희 1,223억>전두환 595억>이승만 355억

고정간첩은 명이다



간첩, 안 잡나 못 잡나? 정답은 ?

신건 원장 "안 잡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잡는다"

탈북자 3만명 시대, 낮선 풍경



노무현 정부 : 베트남에서
468명 조용한 입국
(*2004년 총선의 해)



박근혜 정부 : 중국 유경식당
종업원 13명 요란한 탈북
(*2016년 총선 직전)

탈북자 신문센터는 간첩 제조공장?



80년대 납북어부-재일동포는 간첩 잡는 어장
이명박근혜 정부 탈북민은 간첩 제조공장 : 유우성-홍강철 간첩 사건

탈북자 3만명 시대, 간첩 확률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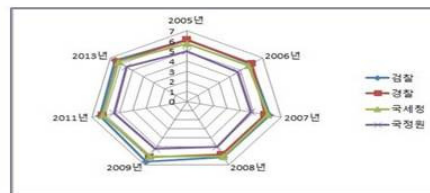
2008년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개소 이후 1만4,118명 기준
탈북자 업무, 한직에서 10대 업무로 : 과거 '대성공사' 방식 답습
탈북자 간첩과 직파-우회간첩은 안보위협 차원이 다르다

국정원의 현주소 : 이상은 007 현실은 7급 공무원

영향력					신뢰도				
순위	기관	점수	순위 (2011)		순위	기관	점수	순위 (2011)	
1	삼성	7.22	1		1	현대자동차	6.16	1	
2	현대자동차	6.88	2		2	삼성	6.08	2	
3	경찰	6.58	5		3	한미제약	5.86	4	
4	한미제약	6.57	4		4	SK	5.80	3	
5	SK	6.51	3		5	LG	5.74	5	
6	경찰	6.33	8		6	대법원	5.33	6	
7	국세청	6.31	9		7	공감원	5.26	15	
8	청와대	6.22	10		8	경찰	5.10	8	
9	LG	6.21	6		9	경사원	5.07	9	
10	공감원	6.18	12		10	청와대	5.05	11	
11	대법원	6.15	7		11	국세청	4.69	7	
12	경사원	6.11	11		12	새누리당	4.49	21	
13	새누리당	6.09	14		13	전경련	4.49	10	
14	국정원	5.51	15		14	경찰	4.48	14	
15	전경련	5.43	13		15	전교조	4.30	20	
16	전교조	4.80	16		16	국정원	4.02	13	
17	민주당	4.48	17		17	참여연대	3.89	16	
18	한국노총	4.40	23		18	경찰	3.88	19	
19	경찰	4.22	19		19	한국노총	3.82	23	
20	민주노총	4.12	20		20	민주당	3.81	17	
21	참여연대	3.95	21		21	민주노총	3.67	22	
22	뉴라이프	3.82	24		22	뉴라이프	3.22	25	
23	통합진보당	3.52	25		23	통합진보당	3.18	19	
24	정의당	2.83	25		24	정의당	2.62	19	

2013년 동아시아연구원(EAI)-중앙일보 공동 파워조직 영향력-신뢰도 조사결과(왼쪽)를 보면, '4대 권력기관' 중에서 국정원만 10위권 밖이다.

아래의 방사형 그래프는 2005년부터 10년간 6회의 조사결과로 국정원은 검찰-경찰-국세청보다 영향력이 한 단계 아래에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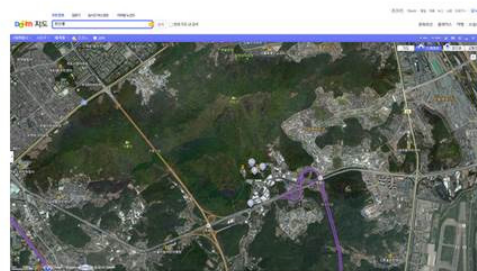
- ◆ 중정-안기부 시절은 무소불위(양지못의 전설)
- ◆ 4대 권력기관은 옛말 ◆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국정원의 현주소 : 아날로그 국정원

국정원의 주소는 다



구글 지도 검색



다음 지도 검색

국정원의 현주소 : 애국심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인재상의 으뜸은 애국심과 헌신

국정원 인재상의 제1기준은 애국심



- ▶ 면접관의 천안함 폭침 질문과 애국심을 연습하는 지원자들
- ▶ 박근혜의 <국제시장> '애국심 코드' 맞추기

- ▶ 채용방식 다양화(NIAT)
- cf) CIA-MI6는 LGBT에 문호 개방

국정원의 현주소 : 조직은 2급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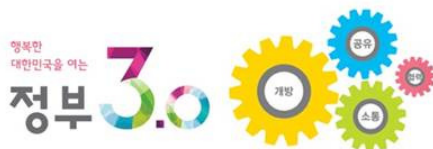


▶ 27개 부서+12개 지부 = 39개 부서 ▶ 27개 부서 = 실무-지원-참모 부서

국정원의 현주소 : 정보공개 암흑시대

정보목록(2005.9월)					12월 정보목록				
연번	제 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연번	제 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1	국제이슈분석	2005-09-01	1년	비공개	1	일일 국제 상황	2015.12.1	1년	비공개
2	국제테러 주요동향	2005-09-01	5년	비공개	2	국외일일정보	2015.12.1	1년	비공개
3	김정일, 제534군부대 산하 농장 방문	2005-09-01	영구	공개	3	일일 국제 상황	2015.12.2	1년	비공개
4	북한, 7년전 인공위성 발사 선전	2005-09-01	영구	공개	4	국외일일정보	2015.12.2	1년	비공개
5	북한, 일본이 위협한 경쟁세력으로 자라고 있다고	2005-09-01	영구	공개	5	일일 국제 상황	2015.12.3	1년	비공개
6	북한, 환경보호 관련 과학기술토론회 개최	2005-09-01	영구	공개	6	국외일일정보	2015.12.3	1년	비공개
7	북한,국제 중요,시사정보 보고	2005-09-01	1년	비공개	7	일일 국제 상황	2015.12.4	1년	비공개
8	북한방송,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 소식 보도	2005-09-01	영구	공개	8	국외일일정보	2015.12.4	1년	비공개
9	일일 주요 국제 예정사항(9.1)	2005-09-01	영구	공개	9	일일 국제 상황	2015.12.7	1년	비공개
10	주간 북한주요동향	2005-09-01	1년	비공개	10	국외일일정보	2015.12.7	1년	비공개

▶ 정보공개목록 비교(노무현 vs 이명박 정부)



▶ 정부3.0에 역행, 여전히 '깜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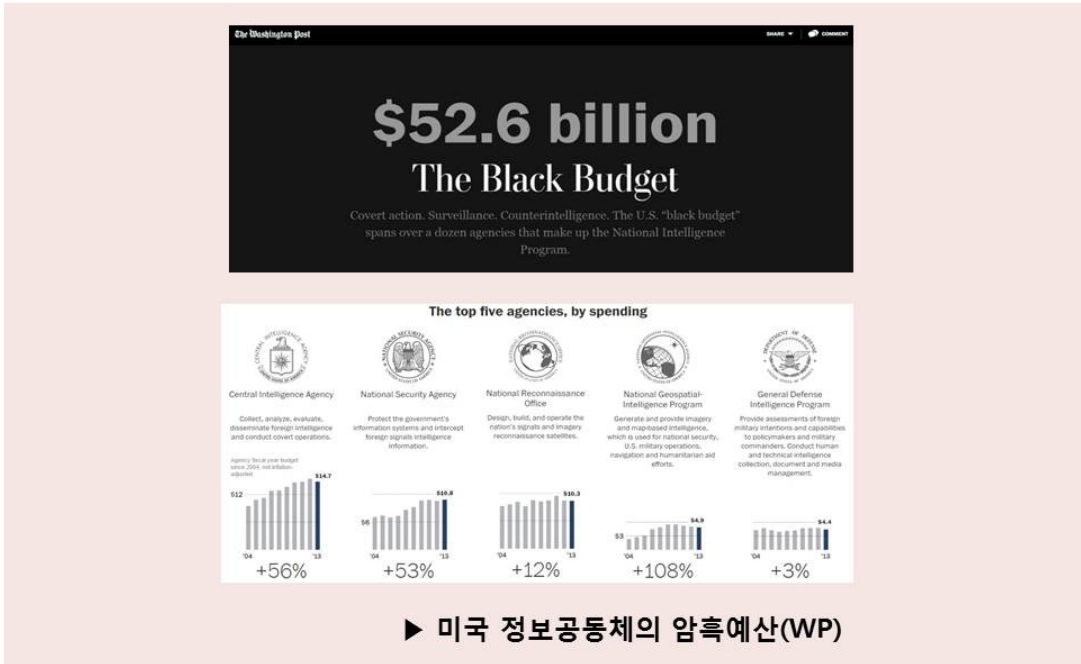
국정원의 현주소 : 누구를 위한 대외비/비밀인가?

본 자료에는 국가정보원 업무 관련 민감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에 소홀 (무단열람·복사·인론유포 등)함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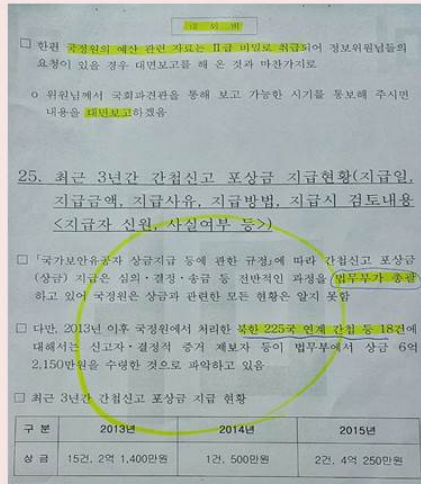
- ▶ 복사-언론 유포 금지(복사광-열 감응반응)
- ▶ 대외비 일련번호와 배포선 표시
- ▶ 국정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현주소 : CIA와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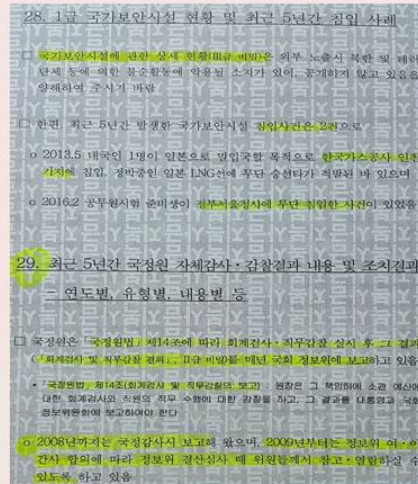


- ### ▶ 미국 정보공동체의 암흑예산(WP)

국정원의 현주소 : 감사-감찰 결과도 비밀



▶ “예산은 2급비밀로 취급되며”
간첩신고 포상금도 대외비



▶ 국가중요시설 현황은 3급비밀
(가스공사, 정부청사 침입 사례)

국정원 사용설명서 : 국정원을 알아야 한다



- ▶ 정보는 국력이다->국민은 국정원을 너무 모른다->아는 것이 힘이다
- ▶ 대외비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조직안보에 영향
- ▶ 국정원 사용설명서 : ‘정보실명제’는 왜 없나? (익명의 유혹 막을 장치)

국정원 개혁 : 정권 교체가 최고의 개혁

“국정원에 가장 좋은 개혁은 정권 교체다”
“시크릿에밀 국정원” 편집 김남 기자, “국가 아닌 정권 안보에 저중—소모적 정치 기업 자랑,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



국정원 개혁에 대해 김남 기자는 “국정원 개혁은 정권 교체가 최고의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이지만, 현재는 정권 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어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남 기자는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이지만, 현재는 정권 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어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 김대중 정부 : 2단계 개혁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노무현 정부 : 2단계 개혁으로 권력기관 힘 빼기
- 이명박근혜 정부 : 잃어버린 10년 => 비정상의 정상화

정보개혁 기준

- 정보 실패 : 북한 핵, 김정은의 의도
- 정보기관의 불법활동 : 댓글 여론조작
- 안보환경의 변화 : 포괄적 안보, 초국가 위협
- 정보환경의 변화 : 동북아 정세, 정보 공개
- 과학기술의 발전 : 정보화와 포괄적 통신감청

정보개혁 쟁점/과제

-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 국내정보 수집활동 및 수사권 폐지
- 테러방지법 폐지/개정
- 국회 통제 강화와 감사원 감사
-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 폐지

국정원의 반론

- 시공 초월한 초국가 범죄, 대남공작의 국제화
- 국내외 통합 추세, 국정원 고유 전문성(대공수사)
-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 통비법 개정
- 불법 처벌 법제도 구비, 국익활동만 위축
- 대북-안보정책 혼선으로 국정 비효율(cf. CIA/DNI)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백화점에서 전문점으로 : 국가정보우선목표 조정
- 정치적 중립성 : *국가정보위, 인준제, 내부고발
- 법제도 개선 : *정보개혁법(가칭) 제정
- 예산통제와 정보공개 : Intelink, OSINT(OSC)
- 정보 자주화 : 첩보위성 등 기술정보수단 확충

국가정보위원회(안)

- 대통령 직속 - 국가정보우선목표 조정 및 공유
- 국정원 외에 국방부(국방정보본부, 정보사, 기무사), 법무부(출입국관리·검찰 범죄정보), 경찰(정보국), 해양경찰청(해상정보), 외교부(국외정보), 금융정보분석원(마약, 테러자금 등 불법자금 이동), 국세청(신용카드 정보), 관세청(밀수정보) 등 참여
- 산하 위원회 신설 ①대테러정보센터 ②감독위원회(민간 참여) ③사생활-인권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유출 방지(건강보험, 연금정보, 보험정보, 인터넷 포탈사이트 개인정보 등)

정보개혁법(가칭)

- 국가정보기관 재편 위한 '정보기구 개혁TF'팀 구성
- 국회 정보위 주도 : 국회, 민간전문가, 국가 및 부문 정보기관 관계자로 구성(개혁 실패와 과거사위)
- 정보개혁법(가칭) 제정 및 관련법 개정 : 형법98조, 통비법, 국정원법 3조, 직원법 20조, 국가재정법, 예산회계특례법, 감사원법 등)



발 제 .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국가정보원, 이번에는 바꾸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1. 서론 - 국가정보원 개혁, 왜 안되고 있나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불명예스럽게도 인권침해와 공작정치의 대명사로 군림해왔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안보에 충실했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적인 구조와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악이었다. 탄생부터 국정원 신세를 졌다. 국정원은 대선개입을 통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연결했다. 대선개입의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사찰의혹도 불거졌다. 기이하다. 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 않고, 국민을 공포에 밀어 넣고 분노에 떨게 하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하였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정원이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의혹 속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그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이다.

국정원이 개혁되지 않는 근본이유는 안보환경을 악용한 기득권 지키기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대북안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종교처럼 여겨져왔다. 어불성설이다.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본연의 기능인 정보수집·분석에 실패하면서 국

가안보에 끼친 악영향이 훨씬 크고도 치명적이다.

정권교체기이다. 그동안 무수한 대선 주자들이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¹⁾. 심지어 민주정부임을 자임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국정원은 개혁의 시늉만 내고 말았다. 다 뜯어고쳐야 한다. 감시와 통제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없이는 국정원은 절대 개혁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권의 선의와는 무관한 것이고, 국가 시스템의 문제²⁾이다. 이제야말로 국정원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

II. 국가정보원 핵심개혁과제

1. 개혁의 필요성

국가정보원³⁾ 개혁을 주창하는 이유는 국정원을 국가와 국익을 위한 ‘최고의

-
- 1) 가장 최근인 2014. 1. 14. 일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2266호)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와 국정원 예산 통제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 2) 누가 뭐래도 현재의 시대정신은 ‘국민주권’의 시대이다. 국정원을 포함해 검찰, 경찰, 기무사,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시작인 국정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이 대통령 소속이며, 어떤 기관보다도 통치권력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정원의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문제가 함께 도마 위에 올라오게 된다.
 - 3) 국정원의 명칭부터 바꾸자는 논의가 있다. 제19대 국회에 제안된 국정원 개혁법안도 통일해외정보원, 해외정보원 등의 명칭변경이 제안되었다.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정보수집의 범위에서 ‘국내정치정보’는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통일해외정보원의 경우 통일을 준비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명칭에 ‘통일’이라는 정책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순수정보기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모순된다는 반론이 있다.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함이다. 핵심은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다. 경제·환경·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전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보다는 기득권유지(김대중, 노무현 정부) 또는 확대(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만 몰두함으로써 한마디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전하고도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권력기구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정보원을 ‘쓸만하고 믿을만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기득권의 저항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사권 이관

가.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

(1)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⁴⁾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4) 형법 중 내란, 외환죄 / 군형법 중 반란, 암호부정사용죄 /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국정원법 제3조 제1항 3호), 이와는 별도로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4호)을 보유하고 있다.

(2)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 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된 바 있다.

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

(1)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이기도 하다.” (1994년 조규광 재판관등 별개의견)

“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각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옹호보다는 대통령 1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

커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 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2)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 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1993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준수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3)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 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

(4) 소위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공통점은 수사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분리는 국가정보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안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유가 책임공유’ (아래 5.가.항)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다. 수사권의 분리는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5) 나치의 게슈타포와 옛 동독의 슈타지(공안위원회)처럼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의 국가기구에 집중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은 늘 위협당했다.

(1) 1961년 박정희의 국가재건회의가 중앙정보부(KCIA)를 설립하면서 수사권이 비밀정보기관에 부여되었다. 비밀정보기관에 주어진 수사권은 검찰⁶⁾의 지휘도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원천이 되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려놔야 새로 태어날 수 있다.

(2)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로 이관될 경우 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⁷⁾, ② 검찰의 공안부 존폐 문제⁸⁾, ③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④ 공판중심주의⁹⁾, 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¹⁰⁾ 등이 쟁점이 될 것이고, ① 검찰과는 별개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¹¹⁾, ② 검사장 직선제, ③ 자치경찰제 설립¹²⁾ 등도 관련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6) 현재는 형식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검찰의 지휘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7) 최근까지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8) 검찰의 공안부를 폐지하고 대공수사를 일반 형사부에서 맡는 것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9)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이 이루어지면,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정보기관의 속성인 ‘밀행성’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10)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분리되면 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권한(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동법 제7조)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후술한다.

11)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달리 검찰은 ‘눈에 잘 띄는’ 개혁대상이다. 2017년 3월 현재, 검찰개혁의 과제로는 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않는 독립적인 ‘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의 설립, ②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사장 직선제, ③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수처 설립은 약 20년동안 논의된 해묵은 주제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원리에 충실한 것이라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이관하는 경우 동일한 논리에 의해, 국정원-검찰-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12)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개혁의 과제로 ‘경찰 분권과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국정원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경찰조직 내에 속칭 ‘대공수사국’이 설치될 경우, 그 민주적 통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은 약 15만명(2016년 기준, 전의경 포함)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가.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

(1)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다.

(2) 그 밖에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나. 해외, 대북 정보부문과 국내정보 부문의 분리문제

(1)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외, 대북 정보부문과 국내 정보부문의 분리문제가 대두된다.

(2) 외국 정보기관의 예를 보면, 통합형¹³⁾과 분리형¹⁴⁾을 비교해볼 수 있겠다.

13)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첫째,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적 개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힘들다. 둘째, 다수의 정보기관으로 인해 이중의 조직과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셋째, 분리된 조직들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문제가 단점으로 존재하며, 넷째, 다수의 정보기관들간에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다섯째, 한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북한이라는 존재가 상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외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분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4) 업무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들은 분리형이 세계적인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첫째, 조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둘째, 조직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셋째, 견제와 균형의 장점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교차적인 중복 점검을 가능케 하며, 넷째, 하나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독점과 오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사찰과 공작 정치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이러한 업무 영역의 분리 및 국내 보안 업무의 축소 필요성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정보업무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라고도 불리우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도 불리우는 SS로 양분되어 있고,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DGSE)와 국토감찰국(DST), 독일은 연방정보국(BND)와 헌법수호청(BfV), 이스라엘은 모사드(Mossad)와 신베트(Shin Beth), 일본은 내각조사실과公安조사청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반면,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보안 및 방첩의 업무가 통합된 경우는 소련의 KGB, 이란의 SAVAK의 경우들이 있는데, 소련도 해체된 뒤 러시아의 경우에는 해외정보부(SVR)과 연방보안부(FSB)로 업무를 나누고 있는 양상이다.

다.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

(1)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해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해외, 대북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하여 기존의 정보수집활동을 해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이 정보업무를 독점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사권 문제 등과 연계하여 판단이 필요하다. 후자를 고려할 경우 국가정보원은 그대로 대통령 산하에 두되, 새로 설치되는 국내정보기관은 국무총리산하에 두는 식으로 하여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사건으로는, ①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

을 강력히 주장하게 하고 있다.

다는 점, ② 현행법도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 이라고 한정열거하고 있어, 형식상 정보수집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 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¹⁵⁾, ③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의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보를 ‘분석’ 할 권한은 없으므로(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3.다.항 ‘기획조정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서 다시 언급)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④ 수사권 분리가 전제된다면, 정보수집범위의 애매모호함은 국회 또는 민간통제로 규율하거나 국내정치관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엄벌에 처하는 입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보안정보의 분리문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이거나 부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4.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가. 현황

(1)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

15) 물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러한 제한 자체가 의미가 없었겠지만, 이를 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나. 기획·조정권한의 폐지가 필요

(1)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획·조정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질 것인가

(1)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업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기관으로 이양할 것인가 문제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고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정보의 조정을 담당하고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포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만, NSC¹⁶⁾의 기능과 역할 등과 관련하여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¹⁷⁾.

(2) 쟁점은 위기관리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맡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최고정책결정자(대통령)를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NSC 또는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 등)이 맡는 것이 원칙이다. NSC가 담당한다고 할 경우, ① 기존 국정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을 이전시켜 NSC의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과 위기관리센터를 집중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 NSC가 조정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즉, 정보의 수집은 국정원이, 정보의 분석은 NSC가 맡는 구조이다¹⁸⁾.

16) NSC가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자문기구(회의체)로서 집행기능(사무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시절 NSC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북·해외 정보도 일단 NSC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NSC에 정보관리실을 신설하여 각 부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종합판단까지 내린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NSC에 강력한 중앙통제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결국 국가정보원의 정보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마저도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다.

17) 일본의 경우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내각관방(비서실)에는 내각정보관이 지휘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이 있는데, 이 일명 내조실에는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정보집약센터와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총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또한 경찰청을 지휘하는 국가공안위원회와 방위청을 내각부로 통합 배치하여 종합적인 긴급사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 연방정부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16개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DIA)·국가안보국(NSA)·국가지리정보국(NGA)·국가정찰부(NRO)·공군정보감시정찰국(AFISRA)·육군정보안보처(INSCOM)·해병정보처(MCIA)·해군정보처(ONI), 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부/국가안보정보처(DEA/ONSI),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분석처(I&A)·해안경비대정보부(CGI),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카운터정보처(OICI), 국무부 산하의 정보·연구실(INR), 재무부 산하의 테러와금융정보처(TFI) 등이다. 9.11. 이후, 미국은 정보기관들 간 정보 공유 문제를 고치기 위해 연방의회는 2004년 정보개혁테러방지법을 제정,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을 통솔하는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했다. 국가정보국(DNI)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미국 국가정보 프로그램을 지휘·감독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국가안보 정보를 보고하고 모든 미국 정보기관들의 수장 역할을 한다. 다만, 국가정보국(DNI)이 다른 정보기관에 대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권위와 파워에 한계가 있고, 2002년 출범한 국토안보부가 막대한 인력(20만명 이상)과 예산(2011년 기준 986억 달러)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18) 이 점과 관련하여 '정보수집업무'와 '정보분석업무'의 분리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권한을 제한하고, 관세청, 금감원,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정보수집기관을 NSC가 종합적으로 통제 가능해야 한다. 결국 국가정보원 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NSC는 각 정보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SC의 정보분석능력

5. 의회와 민간에 의한 통제 강화

가. 정보의 공유는 책임의 공유

(1)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콘트라게이트¹⁹⁾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의회와 정보기관간의 상호 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없는 보고가 이루어지며, 대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²⁰⁾

(2)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PKK) 소속 의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 의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유명무실한 예산통제

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NSC가 대북정책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이 NSC에 담보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제91조)상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통일)해외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19) 1986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 ‘적대국’ 이란에 무기를 팔고 그 대금으로 니카라과의 콘트라반군을 지원한 사건이다.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규명에 나섰다.

20) 우리의 경우도 국회법 제54조 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를 통해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와 위원 및 소속직원의 비밀누설 등을 금하고 있다.

(1)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 회계 중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이다. 국가정보원의 예산 구조는 다른 부처에 비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① 공식적인 본예산(주로 경상비) 외에도 ②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부분, ③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으로 나뉘어져 있다.

(2) 개정된(2014. 1. 14.)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회에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²¹⁾” (국가정보원법 제12조 2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²²⁾(제3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²³⁾”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예외규정을 통해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전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21) 2014. 1. 14. 법개정으로 세입항목이 추가되고 국가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항목이 구체화되었으나, 총액으로 제출하는 점,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22) 2014. 1. 14. 정보위원회의 심사권한이 신설되었으나,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임하고 있다는 점, 보좌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미지수이다.

23) 세부자료제출의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고 하여 예산에 있어 정보위 통제가 무색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법(제84조 제4항 제2문)은 “정보위의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결위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결산의 경우는 통제가 더욱 허술해서 원장의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만을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완전히 외부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²⁴⁾

(4)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국가정보원 예산, 이른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도 문제이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길 수 있는 근거는 예산회계에관한특별법에 존재하는데, 1963. 5. 31. 제정된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법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동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제4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이 거의 절반 이상 지출하고 있지만, 타 부처를 통한 우회적 지출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의 정

24)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단계,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그리고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인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다. 국회에 의한 국정원 예산 통제강화가 필요

(1) 우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 특례법은 국정원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기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예비비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사실상 항목별 세부심사가 불가능하며 결산 시에도 총액으로만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예산을 예비비에 은닉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래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사회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정치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과거 권력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우선적으로 예산구조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특수한 지출구조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다음으로,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예산편성단계)나 감사원(회계검사단계)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이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및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보좌기구는 회계전문가로 구성하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구성하고, 연간 상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집행을 검사하고 문제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근거를 두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국정원법 제14조)을 삭제하여야 한다.

라. 민간참여에 의한 국가정보원 통제

(1)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 의회에 의한 통제방법에 더해 민주적 통제를 위해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나) 그 방안으로는,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의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민간참여를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실정법이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반해 벌이는 정보활동 등을 발견,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국가정보원개혁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하여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족하고 탈권력화를 이루어야 하고,

둘째,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넷째,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도록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행하고, 아울러 민간참여를 통한 통제를 위해 가칭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을 고려한다.

III. 결론

국정원이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이번에는말로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에 기초한 국정원법 개정을 흔들림없이 진행해야 한

다.

물론, 국정원개혁에 있어서 ‘국정원법’ 만이 문제는 아니다. 주요하게는, 통신제한조치의 95%²⁵⁾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적법한 통제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²⁶⁾이 필요하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에 의해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폐지²⁷⁾와 국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²⁸⁾의 저지 등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 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통해 거침없는 ‘환골탈태’ 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번 에야말로 56년간 쌓여온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 끝

25) 매년 통계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2005년에서 2011년까지의 (구)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재구성하면, 최소 94.7%에서 최고 98.5%를 국정원이 차지하고 있다(나머지는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는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는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불법도 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26)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것이 문제이며,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① 국가정보원의 국내수사권을 분리하고 그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권한(법 제5조와 제6조)도 폐지한다. ②,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법 제7조)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③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하여 무(無)영장주의를 해소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한다. ⑤ 무엇보다 감청집행 시 법원 등에서 입회를 하여 실제 감청이 발부된 영장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하고 감청결과는 봉인 후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 등이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⑥ 패킷감청 등 인권침해적인 기법의 사용은 국가기관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서 중단되어야 한다.

27) 테러방지법은 야당 의원 38명에 의한 8일간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그 폐해가 국민적으로 확인되었다.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법을 강행 통과시킨 여파로 약 1달 뒤 치러진 4.13 총선에서 국민은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단을 심판하고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총선직후인 4월15일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제20대 국회에서 제1호로 폐지되어야 할 법으로 꼽히고 있다.

28) 국정원 강화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현재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2016. 12. 28.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통과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집행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 않다는 점, 나아가 이미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책임도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는 점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

토론 1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2 이석범 변호사 (전 국정원 법제관)

토론 3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 (영화 '자백' 감독)

토론 4 김용민 변호사 (유우성 사건 변호인)

토론 5 김종훈 국회의원 (무소속)

토론 6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정원 개혁은 가능한가 ?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은 한 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취지의 원훈을 택했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자유의 끔찍한 박탈을 의미한다. 정대협이 윤미향 대표는 경찰이나 국정원에 의해 통신조회를 몇 차례 당했다. 통신조회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구들이 자신의 생활을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사자는 감시를 유발하는 유형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자제하기에 이른다. 합법적 감시도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은 정보기구의 활동을 최대한 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와 정보기구는 본디 양립하지 않는다. 정보기구의 음모적 구조, 비밀스러운 정보수집, 타자의 심정을 색출하려는 성향, 적대적 태도, 차폐장치, 정보기관원의 뿌리깊은 집단 의식이 민주적 투명성이나 공적인 통제를 혐오한다. 그러면서도 정보기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정질서를 수호한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법치국가적인 형태를 갖춘 국가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은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역사가 그랬다.

2004년 출범한 국정원 진실위는 과거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된 주요한 의혹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였다. 1차적으로 김형욱 실종사건,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사건,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KAL 858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 7개 의혹사건을 조사하였다. 수많은 의혹사건을 낱알이 조사하기 곤란하여 2차적

으로 권력남용의 형태별로 간첩, 노동, 사법, 언론, 정치, 학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007년 국정원은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보기구가 대놓고 보고서를 써서 반성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당시에 이러한 과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정보기구가 본질적으로 독재자의 통치보조장치였기 때문에 범죄와 불법적인 공작을 일삼았던 것은 당연하다. 국정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이 당시에 중요했다.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범죄를 중단하고 정보역량을 갖춘 기구로서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수차례 약속을 배반하였다. 약속배반에 대한 적합한 응답은 해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보고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만 골라서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논두렁 시계사건, 정치인 림살롱 검색 사건, NLL 대화록 논란, 선거개입 여론조작 사건, 좌익효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박근혜 정권에서는 류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탈북자 시위 알바 동원, 박원순 서울시장 조직적 음해 공작, 판사후보자 면접사건, 대법원장 사찰, 현재 불법사찰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 않은 일이 없고, 개입하지 않은 일이 없다. 단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사건이나 의혹사건을 볼 때 국정원은 법을 지킬 역량이 없으며, 더구나 불법적인 어리석음이 아니고서는 정보수집활동이나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없는 조직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의향이나 역량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에 정상적인 정보기술자로서 역량을 보여 줄 인재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불법을 일삼는 곳에 지역전문가나 정보기술전문가들이 찾아와서 국가를 위해 좋은 정보를 날마다 수집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그들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보경연대회 같은

것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정보원은 과연 개혁될 수 있을까? 특정 직원의 과오나 범죄가 아니라 조직 정신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수선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개혁할 수 있을까? 다음 정권도 국정원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할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와 더불어 〈국가 속의 국가〉, 리바이어던으로서 존재를 지속할 것이다. 아마도 이미 국정원은 자신의 정치를 펼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추어 놓고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다. 국정원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보수집과 수사권을 분리시키고, 국내파트와 해외파트를 나누고, 법률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금지하자는 원칙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까! 오히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정보공동체〉 논의를 안에서 정보기관들은 더욱 막강해지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국정원은 불법과 무능에 대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미국식으로 예산은 더욱 팽창하고 이미 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통합지향적인 형태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기관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중앙정보부를 기획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담력을 갖춘 자만이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헌법에 합치하는 비밀정보기구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정보기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대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보기구는 언제나 적(敵)을 상정하고 적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라는 타고난 적이 있어서 정보기구의 생존수단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내상황에서도 국정원은 언제나 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약간만 머리를 써도 적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 재일교포유학생, 납북어부 등 얼마나 많은 간첩을 생산했는가! 최근에 발생했던 류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다. 국민대다수가 정보기구들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갖게 되면 정보기구들은 이렇게 파괴적인 조작을 한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보기구들이 꼬나풀들을 이용하여 파괴행동을 사주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기구들은 비판적인 세력의 자유를 최대한 억압하고 극우적 폭민을 생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독일의 헌법수호청은 극우세력에 대한 감시활동도 주요 업무중 하나라는 점도

다르다.

한국사회에서 정보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원래 극우적 정치인들이 극우적인 심정에서 정보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기구가 권력자를 따라 해바라기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극우적 세계관을 펼치고 확장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전반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에 기울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 행동을 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언제나 예측된다.

어떻게 정보기구를 통제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정보기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국회정보위원회이다. 그러나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보수여야가 사이좋게 정보위원회에 포진하고 있는 한에서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보다 정보의 경쟁적 이용에 대한 주도권이 중요할뿐이다. 수차례 경험에서 보듯이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사항이라고 정보기구가 고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국회정보위원회이다. 객관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적의 정치를 고수하는 정보기구를 상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진보적 정당뿐이기 때문에 진보적 정당의 의원이 정보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정보기구에 약간명의 민간인 정보감독관을 두어 정보기구를 감시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로 하여금 정보기구의 저장자료에 대한 열람조회, 시정 등에 대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에는 필자가 만난 롤프 괴스너 변호사가 니더작센주에 적녹연정 때 주정부 자문관으로 참여하여 주헌법보호청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정보기관법(1992)이라고 자부하였다. 골자는 다음과 같은데 이 법은 사민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자 곧 옛날로 돌아갔다고 한다. 1. 헌법보호청의 업무분야의 축소, 2. 헌법보호청의 공격문턱을 높임(심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폭력적 행위시도). 3. 정보기관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4. 직업상 특수한 신뢰관계를 갖는 성직자, 변호사, 의사, 약사, 언론인, 의원을 헌법보

호청의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없음. 5. 헌법보호청은 주거의 안이나 밖에서 도청할 수 없음. 6. 관련인의 조회요청에 대한 헌법보호청의 조회거부사유의 제한. 7. 의회통제에서 모든 작은 교섭단체에도 통제권을 부여함. 8. 공식보고서에 예산총액과 직원총수, 정보기관적 수단의 사용실태 보고.

국정원의 영토로서 탈북자.

탈북자들이 어버이연합의 일당 알바에 동원된다는 것은 비극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문화에 합당하게 적응해야 하는데 국정원의 작업에 끌려다니는 상황에 있다. 결국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합당한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하는데 국정원이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탈북자의 정착에 대한 교육, 적응이 국정원의 관할 사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탈북자를 국정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합당한 정치시민교육, 인권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에게 그들의 일상이 이관되어야 한다. 지난 해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적인 입국을 보면서 탈북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납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지받았는지 의문스러웠다.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그들의 입국을 감시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구도 입국의 순간부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의 신체도 국가기관의 영토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하 글은 북한식당종업원들의 입국을 보고 〈인권연대 2016.05.18〉 소식지에 실은 글이다.

신체를 보여라!

하베아스 코르푸스(habeas corpus). 이 라틴어는 문자적으로 '당신이 그의 인신(人身)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의 제도적 취지를 살린다면 '구금이 적법한지 심사할 수 있게 판사 앞에 구금된 자를 데려오라'는 의미다. 통상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은 17세기 영국혁명의 결실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인신보호영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장들이 영국법에 등장하였다. 인신보호영장은 배심제와 더불어 영국인이 자랑으로 삼을 만한 제도다.

우리도 구속적부심사제의 형태로 이를 공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하베아스 코르푸스'는 자의적 구금에 대한 포괄적인 항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적 통제 수단에서 배제된 집단들이 지금 이 땅에도 존재한다. 불법 이주자와 탈북자가 그러한 실례들이다. 그들은 법 바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법자(exlex)로 규정된다. 인권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치밀한 욕망이 그들의 정신과 신체를 재구성한다.

최근에 중국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인이 집단으로 탈출하여 제3국을 통해 입국하였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졸지에 이루어진 입국은 누군가의 작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뒤따른다. 이 입국 사건은 북핵 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로 매체에서 대서특필되었다. 물론 선거 결과에 당국자의 의도대로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최근에는 일부 종업원들이 비자발적으로 입국하게 되었다거나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는 흥흥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 물론 의혹은 입국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너무나 엉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필자는 그래서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말하고 싶다.

필자의 논지는 '단적으로, 탈북자의 신체를 보여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최장 180일까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최장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무한정 구금은 아니므로 과거보다 개선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보호센터에 180일간의 구금은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국정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국정원은 탈북자들의 가족이나 친지, 변호인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가는 탈북자를 법의 보호 바깥에 두면서 위험적인 구금을 북한이탈주민법

으로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관행이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에 부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법을 혁신하거나 아예 '신자유주의적으로' 철폐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에 해당한다. 집단 탈북의 후폭풍은 이제 시작된 것 같다. 북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이 납치라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에게 당사자의 접견을 요구하고, 유엔 인권기구들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호소가 CNN을 통해 국제적으로 전파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가족의 행태를 북한 당국의 정치공세쯤으로 간주하고 응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는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에 기초하여 정치공세를 펼칠 수 있으므로 그들의 행태가 정치공세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가족들에게는 사건의 진실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한 당국을 상대로 탈북자들과의 접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든지 신뢰할만한 제3자(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인권 NGO 등)를 통해 그 권리를 대리 행사하여 진실규명을 요청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탈북자의 보호를 내세워 가족의 권리를 묵살할 수 없으며, 가족의 요구에 응답해야만 한다.

보호센터(국정원이 운영한 과거 합동신문센터의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망명하거나 귀화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국적법이나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배적인 학설에 따르면, (북한 국적을 가진) 북한 주민도 잠재적으로 한국 국적자이지만 남북 관계나 국제관계상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하는 때에 한국 국적자로 현실화된다.

그래서 탈북자는 일반 외국인과 달리 간편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자를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더욱 중요한 과제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국정원의 관할지에 속하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몇몇 사건에서 보듯이 탈북자들은 보호센터나 하나원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통해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종속된 인간으로 재탄생하거나 기관의 정책에 의해 간첩으로 탈바꿈되기도 하였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입국한 13인이 진정으로 한국 입국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풍문이 무성하지만 그것을 알 방법이 없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인권을 다각도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국자들이 13인의 탈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나라에 입국했다는 사정을 내세워 북한의 가족, 변호인, 여타 인권기구나 NGO의 접견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은 탈북자에 대한 현재의 보호조치가 수사 절차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조사에 불과하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나 변호인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국정원의 희망사항일 뿐 인권기준은 그렇지 않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침 1) 나아가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구금자 보호 원칙' 2)은 이러한 변명을 명백히 거부한다. 보호 원칙은 억류 및 구금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보호 원칙에 의존하여, 또는 이를 활용하여 억류중인 탈북자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권리로 네 가지 정도를 부각시켜 보겠다.

첫째로, 구금(억류)된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원칙 10, 11, 13, 14). 탈북자들은 자신의 권리 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법무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질적인 자유주의 사회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탈북자의 보호 신청도 그저 허구적인 요식행위로 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신청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심리적 취약성과 문화적 정치적 이질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에 민감하게 행동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어쩌면 탈북자에게 열의를 가진 변호인만이 보호센터에서 유일하게 우호적인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탈북자에게 변호인은 권리의 옹호자일 뿐만 아니라 자유사회의 문화적 통역자들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로,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국은 구금 및 조치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원칙 16, 19). 현재 구금된 사람들은 독방에서 조사를 장기간 받거나 조사기간에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고 있다. 이들은 조사기간 동안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구금된 자와 가족, 친지들과 접견, 전화 연락, 이메일 연락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해외나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통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그들이 원하거나 구금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당국자가 통지를 해야 한다.

셋째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변호인의 선임권의 보장이 아니라 정기적인 접견을 보장하고, 일정 시간 입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범죄수사에서도 입회할 수 있는데, 행정조사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해서 보호 원칙 18조는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구금된 탈북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변호인의 중요성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넷째로, 보호센터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기구(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모니터 해야 한다(유엔난민기구 지침 10).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이 국제인권기구에 조사를 요구했으므로 그 후속절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미 2015년 11월 1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기준에 적합한 보호센터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보호센터의 인권친화성이나 보호조치의 적법성 여부보다 입국의 적법성 또는 정상성 여부가 더욱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비자발적인 입국을 차단하는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탈북자를 국내 입국과 동시에 신속히 법관 앞에 소환하여 입국여부의 진위를 확인하고 비자발적인 입국인 경우에는 희망에 따라 출국시킬 수 있는 입국적부심사제(入國適否審査制)로 요약된다. 그리하여 과도하게 긴장을 조성하면 진행되는 기획탈북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구금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구금적부심사제를 통해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이제 정부도 북한 주민의 탈북 유도를 통해 체제경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남한 입국 이후에 이들의 인권보호와 사회 정착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집권세력이 아직도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 몰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내 정치를 위해서 기획탈북을 상투적으로 악용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

자의 인권보장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교육, 적응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국정원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견해를 가진 시민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적 세계관에 친화적인 인간, 그리고 자율적인 역량을 가진 시민은 어두운 복도에서 탄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성의 대상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시민 다움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1) UNHCR Guidelines on the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he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2012.
- 2)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9 Dec.1988 A/RES/43/173>

“리셋 ! 국가정보원” 토론편

이석범 / 변호사 (전 국정원 법제관)

1. 문제의 제기

○ 현재 국정원의 현황

-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
- 통합형 정보기관, 정보·수사기관

○ 두 발제자의 키워드

- 정권교체가 국정원 최고의 개혁
- 국가시스템의 문제: 새로운 디자인

○ 정부기관 개혁의 실패 원인

- 개혁주체의 개혁의지 실종 : 댕글사건, 2013. 8. 국정원 ‘셀프개혁’
- 정치와 정보의 결탁 :
김영삼정부(1993. 12. 여야합의 안기법개정, 한보사태, 1996 12.26. 날치기 통과, 수사권 부활), 이명박정부(2008. 9. 김성호 원장 경질이유, 촛불사태 무능)
- 태생적 한계 : 군사정권 보위, 직무범위(국정원법 제3조)²⁹⁾ 온존

29) ① 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2. '참여정부 국정원' 개혁의 한계

○ 근본적, 제도적 개혁부재

- 1단계 개혁안(인수위), 2단계 개혁안(원장내정자 보고), 3단계(조직운영개선T/F)
2003. 4. 국내정보분야 축소,
2004. 4. 지원인력 축소와 현업부서 인력 증원, '국정원 과거사발전위'
- 김승규원장 : 2006. 4. 수사권폐지 수용불가

○ 한나라당의 국정원개혁안

- 2003. 5. 6. 한나라당 정형근, 홍준표, 이윤성의원의 국정원폐지안
- 박근혜대표의 발언, 김무성, 김기춘, 이재오, 원희룡의 발언

○ 반대세³⁰⁾의 비밀: 반대한민국세력 = '종북좌파' 이념의 생산과 유포

-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 부정 : 법치주의 부인, 인권침해, 선거개입

3.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일탈모습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

- 광범위한 불법사찰 : 정치인 사찰, 법원 검찰에 압력행사, 언론사 대책회의 관여, 노조 사찰, 시민사회단체 탄압, 4대강 비판 교수모임 사찰, 프랑크 라 튀 UN의사표현 특별보고관 사찰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비 누설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감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정하는 조정·감독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일제의 '비국민', '불령선인'의 재림

- 정보수집 실패 : 2011. 12. 19. 김정일 위원장 사망정보 수집 실패, 2012. 12. 12. 광명성 3호 실체 파악 실패, 2013. 2. 12. 북의 3차 핵 실험관련 정보수집 실패
- 2012년 12월 대선 개입 : 원세훈 원장의 지시

○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

-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운동 차단공작' 문건 작성의혹
- 2013. 6. 검찰의 특별수사팀 대선개입사건 축소기소 및 재판 방해
- 2013. 6. 24. 남재준원장의 NLL대화록 불법공개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및 증거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해킹 의혹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정부비판인사에 대한 '적군리스트' 작성관여
- 현재 탄핵심판 불법사찰 의혹

4.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가정보기관 개혁의 방향

○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전문정보기관상 정립

- 산업화시대의 국가정보기관 패러다임은 민주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에 불합치
⇒ 각국³¹⁾은 전문정보기관화 추진
- 냉전체제의 종식, 탈냉전시기의 안보개념 확대 ⇒ 적법 업무수행 정착으로 국민의지지와 신뢰 회복
- 글로벌시대에 안보와 국익 수호 증진 첨병 역할수행으로 국가발전 견인(경제정보 및 과학정보 역량 강화)
- 신안보환경 대응체제 강화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경쟁력 제고

○ 동북아지역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선도국가의 역할 보좌

31) 일본은 2013년 12월 4일 수상실 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 중국은 2014년 10월 23일 공산당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국의 공안.검찰.법원.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직속으로 재편

- 분단국의 특수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대북정보역량 강화하는 한편,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이중적 지위 고려 ⇨ 파탄된 남북대화과 6자회담의 복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추진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과 임기 내 남북경제연합의 완성에 필요한 해외, 대북정보 수집 활동 강화
- 동북아평화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한 해외정보 역량 강화

○ 민주적 통제의 강화

- 정보활동의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활동을 정당화,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기관 견제
-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정보기관예산의 적정 운용과 정보활동 통제와 감시 필요

○ ‘제3기 민주정부 국정원’ 개혁의 성공 요인

- 근본적, 제도적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헌법적 가치 실현
- 인권과 국가안보의 조화 : 정보인권과 국가정보역량강화

○ 기대효과

- 정보수집과 집행기능 분리를 통한 권력분산 추구
- 순수전문정보기관화로 해외·대북정보역량 강화
- 인권침해와 불법사찰 논란 불식
-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원천 차단
- 정보기관의 ‘종북몰이’ 근절
- 국회의 민주적 통제강화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기능

첨부

1. 오마이뉴스 2003. 5. 6. 기사

2. 서울신문 기사
3. 팩트TV 2015.7. 29. 기사
4. 프레시안 2013. 7. 5. 기사
5. 데일리NK 2006. 4. 27. 기사
6. 중앙일보 2013. 7. 1. [중앙시평]
7. 프레시안 2013. 6. 30. [긴급인터뷰]
8. 중앙일보 2015. 4. 3. 인터뷰
9. '반대세의 비밀' 표지
10. 독일 연방정보기관통제법

기사 프린트 페이지

정형근 등 "해외정보처 수사권 폐지할 것"

03.05.06 10:18 | 최종 업데이트 03.05.07 15:10 | 최경준(235jun)

한나라당은 6일 오전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단장 정형근)' 1차 회의를 갖고 5월 말께부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네 가지 원칙을 확정했다.



▲ 정형근 의원은 6일 "신설되는 해외정보처는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정형근 단장과 홍준표·이운성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외정보처는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북정보기능·대테러 정보수집 기능·해외 정보수집 기능만 주겠다"며 "국회 예산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국정원 폐지 법안과 해외정보처 신설법안을 함께 내야 한다"며 "국정원 폐지는 '국가정보원을 폐지한다'라는 한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반공국가일 때는 (국정원이) 나라를 지킬 때도 있었고, 독재국가일 때는 (국정원이) 정권의 앞잡이 역할도 했으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단장은 특히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 "실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망각한 채 적국에 편의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이 인적청산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단장은 이어 "과거 호남사람들이 (국정원에) 많이 와 있으니까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경험 없는 서동만 기조실장이 인적청산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과의 일문일답이다.

- 예산통제 강화라는 의미는.

홍준표 의원 "국정원 예산이 항목별 예산편성이 없다보니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많아 예산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항목별 통제도 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Articleview/article_print.aspx?... 2017-03-04

- 2001년에 이미 (국정원 폐지) 법안을 마련한 적이 있지 않나.

홍준표 "실제로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 국정원 폐지 법안과 해외정보처 신설법안을 함께 내야 한다. 국정원 폐지는 '국가정보원을 폐지한다'라는 한 줄이면 된다.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반공국가일 때는 나라를 지킬 때도 있었고, 독재국가일 때는 정권의 앞잡이 역할도 했으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국정원 폐지에 대해 당내에서 합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당내 논란은 어떻게 하나.

홍준표 "국정원 폐지가 당론이다."



-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원 폐지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 홍준표 의원은 6일 "국정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홍준표 "지난 대선 때 '국정원 폐지' 검토가 있었으나 폐지 주장자와 유지하자는 사람들 당내 논란이 있었다. 선거 때마다 보니까 '정부기관 폐지를 할 수 있냐'고 해서 말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도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고, 인수위에서 일부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부터 폐지하는 것이 대선 공약으로 어떠냐는 내부 검토가 심도 있게 있었다. 그 당시 성명도 내고 그랬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국가기관을 폐지한다는 것이 선거 전략상 부담스럽다는 지적이었다. 그 당시 나는 찬성했었다. 정책본부장으로 그랬다."

- 네 가지 원칙 외에 논의 방향은.

이윤성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개편 방안, 재조정 방안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전에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수 차례 공청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기본 골격에 대한 개편 방향 이상의 논의는 앞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 정치적 압박용이거나 타협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아닌가.

홍준표 "둘 다 아니다. 작년 대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해 둔 대로 실천해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정원 개혁 기본 방향은 이렇다. 국내 기능을 모조리 폐지한다. 수사권도 폐지한다. 대북 정보수집 기능,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해외 정보수집 기능만 주겠다는 것이다."

- 해외정보처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정형근 의원 "수사권도 폐지할 것이다. (수사권 폐지는 나의 기존 입장과는 다르지만) 당론에 따른 것이다. 영국의 MI5·MI6, 독일, 프랑스 등의 정보 기관들이 전통도 있고, 잘 돼 있다. 이를 참고로 할 것이다."

5월말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선진화된 국가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기능을 없앨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청회는 앞으로 3~4차례 더 할 예정이다.

- 해외정보처로서 순수한 정보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대공업무가 취약해지지 않겠나.

정형근 "국가정보기관에게 더 이상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공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형근 부장-홍준표 차장' 체제 한나라당 판 안기부 만들어라"

한나라당이 국정원 폐지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 판 사설 안기부를 만들어 '정형근 부장-홍준표 차장'체제로 운영하라"고 정면 반박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정원 폐지 기획단까지 만들어 정형근, 홍준표씨에게 책임을 맡긴 것은 과거 안기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한나라당의 자가당착적인 행동"이라며 "국정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정치권이 놓아 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 2017 OhmyNews

OhmyNews

서울신문

정형근 국정원폐지 추진단장 / “정치적 악용되느니 국정원 없는데 낫다”

입력 : | 수정 : 1970-01-01 09:00

전직 국정원맨으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추진기획단' 단장을 맡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일 “국정원은 이미 무력화돼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느니 없는 게 낫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6일 첫 회의에서 뭘 논의하나.

-국내 부서는 폐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다만 방첩 부문을 살릴 거냐,살리면 해외 정보처에 돌지 경찰에 줄지 아니면 일본公安조사청처럼 별도로 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미국처럼 FBI와 CIA가 분리되는 것이다.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해도 추진시기가 국정원 인사파문과 맞물려 '화풀이성'이란 지적도 있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수사권 폐지 요구가 이미 있었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가자는 것이다.정보기관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미국 FBI에도 과거 인권유린 요소가 있었지만 비판받으면서 미란다원칙 등이 생겼다.잘 했다는 것 아니다.다만 당시 순기능적 역할도 있었고 지금 잣대로....

안보를 강조해온 입장에서 보면 '자가당착'이라는 시선이 있다.-북한에 돈이나 갖다 주고 '간수' 같은 간첩도 다 풀어주지 않나.간첩 하나 잡는 데 10년,20년 공작해야 한다.난수표 등 증거를 가진 간첩은 5~6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국정원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고영구-서동만 임명에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개혁할 게 뭐가 있나.이미 대공 부문은 무용지물이 됐고,요즘 '인권유린'을 누가 하느냐.지금 국정원에 필요한 것은 글로벌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미국을 아는 인사가 하나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정보를 주겠나.인공위성 사진 등 미국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북한 움직임에 눈뜬 장님이다.

정 의원이 폭로한 정치권 사찰을 위한 '도청'은 개혁 대상 아닌가.

-2002년 3월부터 도청 시설 없었다.내가 정보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뒤로 다 뽑아 버렸다.

국정원 직원들은 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발하지 않을까.

-국회에 13명 출입하는데 의원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이미 직업에 불안을 느끼고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다.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

박정경기자 olive@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프린트하기

김무성도, 김기춘도, 홍준표도 적극 밀어부쳤던 '국정원 해체'급 개혁

참여정부 당시 끊임없이 추진됐던 한나라당의 "국정원, 정치사찰 금지"

뉴스일자: 2015년07월29일 16시14분

【팩트TV】 국정원의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구입이 사실로 드러났고, 대국민 사찰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정원은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며 무조건 '믿어달라'고 강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국정원을 감싸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 4월 30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같이 추진했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을 제안해 의결을 이끌어냈던 홍준표 현 경남지사는 "국정원이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나왔다."며 "국정원이 정치사찰, 도·감청, 대북뽕거래를 일삼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의 '국정원 해체'(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처)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고문기술자'로 유명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기능 강화 ▲국내 부문 검찰 이관 ▲대북관련 부문 통일부 및 국군 기무사로 이관 등을 뼈대로 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정 전 의원은 국정원 전신 안기부에서 간부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공안사건을 담당한 바 있어, 자신이 근무한 곳에 칼을 빼들려고 한 격이다.

당시 기획단 소속이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http://facttv.kr/facttvnews/print_paper.php?number=11465&news_artic... 2017-03-04

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핵심 역량을 해외정보 수집에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의 국정원 설치 조항과 국정원법을 없애고 대신 해외정보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의 내부기류는 '국정원 폐지'보다는 '국정원 개혁'이 대세라 잠잠해지는데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일명 안기부X파일, 삼성X파일 사건)이 터지자, 이규택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많은 분들이 개편이나 쇄신 얘기를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며 "권력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약, 아편과 같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CIA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특검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지행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담아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도·감청 시설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왔다."며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3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발의한 19명의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단장을 맡았던 정형근 전 의원 외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무성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19명이 낸 안에는 ▲특정정당·정치인 동향파악과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정치적 중립성 등 4가지 직무수행원칙 신설 ▲국회의 국정원장 탄핵소추권 신설 ▲국정원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과 분기별 회고보고 의무화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신설 ▲검찰 수사지휘권 강화 명문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국정원 '폐지'가 아닌 '개혁'으로는 당시 내놓을 수 있는 최대 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이같은 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지난 2013년 9월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야당 시절에 국정원 개혁법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것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았던 요소가 있었다."면서 얼버무렸다.

당시 이들이 낸 국정원 개혁안이 무산된 것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과반을 차지한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원 염호'에 당의 명운을 걸 듯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정원이 대선개입 파문을 비롯, 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물의를 빚어온 만큼, 스스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국정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팩트TV후원 1877-0411]

이 뉴스클리핑은 <http://facttv.kr/facttvnews>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첨단기



"국정원 쇄신" 외치던 정치인 박근혜는 어디 갔나

[기자의 눈] '2005년 박근혜'와 '2013년 박근혜', 그리고 국정원

최종수정 2013.07.05 19:43:00 | 박세열 기자 | lys123@pressian.com

"앞으로 국정원은 국익에만 봉사하는 전문 정보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사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안보나 정보 환경도 바뀐 만큼 그에 맞게 국정원이 이번 기회에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권력 남용이 현재 문제 되는 만큼 국정원의 쇄신은 참으로 필요하다."

누구의 발언일까? 현재 야당 대표의 발언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던 2005년 8월 18일 당 상임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국정원의 불법 도청과 정치 개입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던 때다.

당시 회의장으로 돌아가보자. 불법 도청이라는 말만 '대선 개입' 혹은 '국가 기밀 공개'로 대체하면,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당시 상황이 대부분 일치한다. 강재섭 당시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불법 도청도 문제이지만 거짓말이 더 문제다. 미국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은 거짓말한 것이 더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직권 남용 금지, 불법 도청 금지를 강화하는 그런 국정원법, 국정원 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 또 국정원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 개편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계속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원희룡 당시 최고위원도 발언했다.

"이번에 나아가서 견제 없는 정보 권력의 독주 체제인 현재 국정원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해외 정보 기능과 국내 정보 기능을 분리하고 국내 정보에서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 취합을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보 기관 상호 견제를 통한 분권, 그리고 국회의 감시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해

외 정보, 국내 정보 또는 수사 기관과 정보 취합 기관 등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위한 그런 기관 분리의 예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는 권력 기관이 견제 받지 않고 국민의 사생활 또는 공작 정치의 본산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권력 남용을 뿌리 뽑자고 외쳤던 새누리당 정치인들, 지금 다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적어도 한 분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하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그분은 2013년에 벌어진 국정원 파동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해오지 않았다"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박 대통령의 입장은 "나는 모른다. 국회가 알아서 하라"로 요약된다.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힌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놓은 채 "나는 관여해오지 않았다"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개혁 말하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는 어디에 있나?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이다. 국정원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다른 조직보다 더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다. 입법 전문가들이 국정원법 제9조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넣은 이유다. 그러나 그 조항을 밥 먹듯 어긴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 국정원 개혁을 통해, 권력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 시스템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진행형인 국정원 정치 개입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그 후에 국정원 쇄신과 개혁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야당이 먼저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정치 개입과 관련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업무를 폐지하되, 이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해 정치 공작과 인권 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막는 내용도 담았다. 국정원의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예산 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엉뚱한 일을 기획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게 했다. 국회 정보위의 권한도 강화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정보 수집 파트를 폐쇄하고,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중앙정보부 이래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을 계속해왔다"며 "차제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바깥 대북 정보를 포함해 해외 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하고, 국내 정보는 경찰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경찰에게 국내 정보를 전담하게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핵심은 국내 정치 파트 폐쇄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까? 미지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 끌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국정원의 실패를 인정할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목소리를 내는 인사도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조졌다'"며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은 독재다. 지금도 그것 그대로이다"라고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때만 되면 국내 정치에 기웃거리고, 선거판을 기웃거리고, 그 래 가지고 현 정권이 끝나면 지난 국정원장들은 전부 감옥 가고 구설(에) 오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적어도 국정원이 가진 국내 정치 파트, 이걸 해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지금 실세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언론은 이 의원 발언의 무게를 진지하게 재보려는 수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하던 시절 "국가정보원이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이(명박) 전 시장과 관련한 X-파일을 작성했고, 이것이 당시 권력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다. 2005년 X파일 사건 때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 할 말을 했다. 적어도 일관성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는 원칙의 정치인은 이재오 의원 한 명뿐인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은 8년 전 말한 대로 국정원 개혁을 천명해야 옳다. 이제 와서 침묵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표방한 정치인답지 않은 일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일리NK

김승규 원장 "국정원 수사권 폐지 수용불가"

"우수 인력 정보 활용해야 대공수사 원할"

| 2006-04-27 13:53

☑ 열린우리당 국정원 개혁소위 임종인 의원 등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국회 정보위에 제출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김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은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김 원장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선부르게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그동안의 수사 경험과 우수한 인력, 정보망을 활용할 수 없게 돼 대공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직 경찰만으로는 대공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 개혁소위 의원들은 수사권 폐지를 국정원 개혁의 바로미터로 여기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최근들어 이들의 주장에 따른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당·정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은 있다. 같은당 조성태 의원은 "북한이 체제전복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고, 국내 정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면서 "수사권 폐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루 전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개혁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방안과 시민단체들의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집중 검토한 바 있다.

수사권 폐지 여야, 정부간 의견차이 여전해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개혁소위 의원들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을 최종 제안했다. 이들은 과거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및 권력남용을 이유로 내·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기획단이 그동안 수사권 폐지 문제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rint.php?cataId=nk00900&num... 2017-03-07

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근 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당 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문제를 담당해온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측은 “임 의원이 제출한 개혁방안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도청 사건 이후 국정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사권 폐지 및 국내외 정보 업무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차이가 여전히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국가보안법 사건은 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착수 즉시 관할 지검장에게 지휘를 받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사권 존치’ 입장이다.

시민단체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념적 좌우성향에 따라 의견을 달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소위에 제출한 개혁방안에서 과거 정보기관이 저지른 인권유린과 권력남용 사례를 들어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선진화정책운동’은 분단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보안정보 수집활동 허용 여부와 국내외 활동을 분리하는 문제도 쟁점 중 하나이다.

열린우리당 개혁소위는 국정원이 정치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금하자는 입장이다. 국내정보는 총리 직속 국내보안청으로, 국외 정보는 대통령 직속 해외정보처로 분리해 사실상 국정원에서 국내 대북 분야 정보 수집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국내보안 보안정보 수집과 대북 정보기능을 없애고 관련 조직도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가간 교류와 이동이 빈번해지는 시대에 국내외 정보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 현재의 활동을 유지하되 수집정보 대상을 구체화 하자는 주장이다.

정보위는 현재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rint.php?cataId=nk00900&num... 2017-03-07

[중앙시평] 통합형 정보기관, 이젠 재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3.07.01 00:40 수정 2013.07.01 09:01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국가정보원에 대해 필자는 큰 애착을 갖고 있었다. 한때 정권안보의 시녀 노릇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안보의 첨병으로서 국정원이 가진 고유의 가치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몸담고 있는 학교에 '국가정보론'이라는 과목을 국내 최초로 개설하고 1990년대 중반 '국가정보연구회'라는 학술모임을 만들어 국가정보학 교과서도 냈다.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장직에 위촉된 것도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당시 대통령의 개혁 지침은 분명했다. 국정원이 더 이상 권력기관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위원으로 참가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해외 및 대북 정보 기능과 국내 보안 기능을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필자와 안보부서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국가정보는 안과 밖을 구분하기 어렵고, 해외와 국내로 분리하면 오히려 두 개의 공룡조직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9·11사태 이후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해외정보와 국내보안 기능을 통합하려는 추세인데 애써 만들어놓은 통합형 정보기관을 쪼갤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통합형 국정원을 유지하되 대폭적 개혁을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방안을 수용하긴 했지만 대신 국정원의 권력화를 막을 여러 조치를 취했다. 우선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독대 관행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통해, 대북 및 해외 정보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보고토록 했다. 국정원장에 '실세'와는 거리가 먼 '법을 잘 지킬 사람'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법조인 출신인 고영구, 김승규 원장이 발탁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 대통령의 처방은 주효했다. 국정원의 '힘'은 대폭 빠졌고 국내 정치개입 악습도 두드러지게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 회고해보면 노 대통령이 옳았다. 그때 분리형으로 갔어야 했다. 이명박정부 5년간 국정원이 얼마나 망가졌는가가 그 방증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중북세력으로 규정해 심리전 공작을 전개하고,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직원들을 시켜 고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무더기로 유포하는 기관을 어찌 '국가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검찰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각종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헌정질서를 스스로 농단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모습은 배신감 그 자체다. 21세기 '민주'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상회담 기록은 통상 1급비밀로 분류돼 영구보존하는 게 상례다. 이를 2급비밀로 분류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합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애초에 대화록을 비밀로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정보기관의 임무는 비밀정보를 수집, 분석, 생산해 이를 지키는 것이다.

‘기관의 명예’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이를 공개한다는 건 어느 모로 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정원은 정치적 판단을 내리거나 정책을 수립, 집행, 홍보하는 부서가 아니다. 그건 대통령의 몫이다.

이쯤 되면 통합형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은 재고돼야 한다. 정치공작이나 하는 국정원을 누가 국가안보의 대들보로 믿고 따르겠는가. 거듭ना야 한다. 대북 및 해외 정보, 외사방첩, 과학기술 정보를 제외하고 국내 정치개입의 소지가 있는 조직은 모두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단순한 이미지 개선용 개혁으로는 그 부작용과 적폐를 들어내기 어렵고, 정보기관 고유의 기능을 되살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측근을 정보기관 수장으로 임명하는 관행도 버려야 한다. 전문가 원장에게 임기제로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길이 열린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그것만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는 촛불의 함성을 막고 무거운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다. 또한 그것만이 이 나라의 안보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이명박근혜' 국정원, 박정희 때로 회귀한 까닭은..."

[긴급 인터뷰] 안병욱 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 <1>

최종수정 2013.06.30 13:32:00 | 김덕련 기자, 최하얀 기자 | pedagogy@pressian.com

국정원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댓글을 활용한 정치 개입의 실체가 드러나며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기습 공개하며 한국 사회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 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근래 국정원의 모습을 보며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떠올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정과 안기부는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하며 음습한 정치 공작을 일삼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악령'들이다. 국정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프레시안>이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안 교수는 과거사 진상 규명 전문가로서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2004-2007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안 교수는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박정희-전두환 때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퇴행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길 바랐지만, 국정원은 환골탈태하지 못하고 다시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말이다.

안 교수는 "과거사 정리를 통해 국정원의 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회한이 든다"며, 근본적인 조직 개편을 비롯해 국정원을 바로잡을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6월 27일 안 교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프레시안>은 안 교수 인터뷰를 2차례로 나눠 게재한다. 다음은 인터뷰 앞부분이다. <편집자>

국정원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프레시안 : 국정원이 연이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정원 과거사위 활동을 한 당사자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중정 창설자 JP "국정원 수사권 검찰에 넘겨야"

[중앙일보] 입력 2015.04.03 01:40 수정 2015.04.03 09:32



김종필(얼굴) 전 국무총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대북정보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총리는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창설자다.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담'] <15> 한국판 CIA의 출범
"수사권 있으니 정치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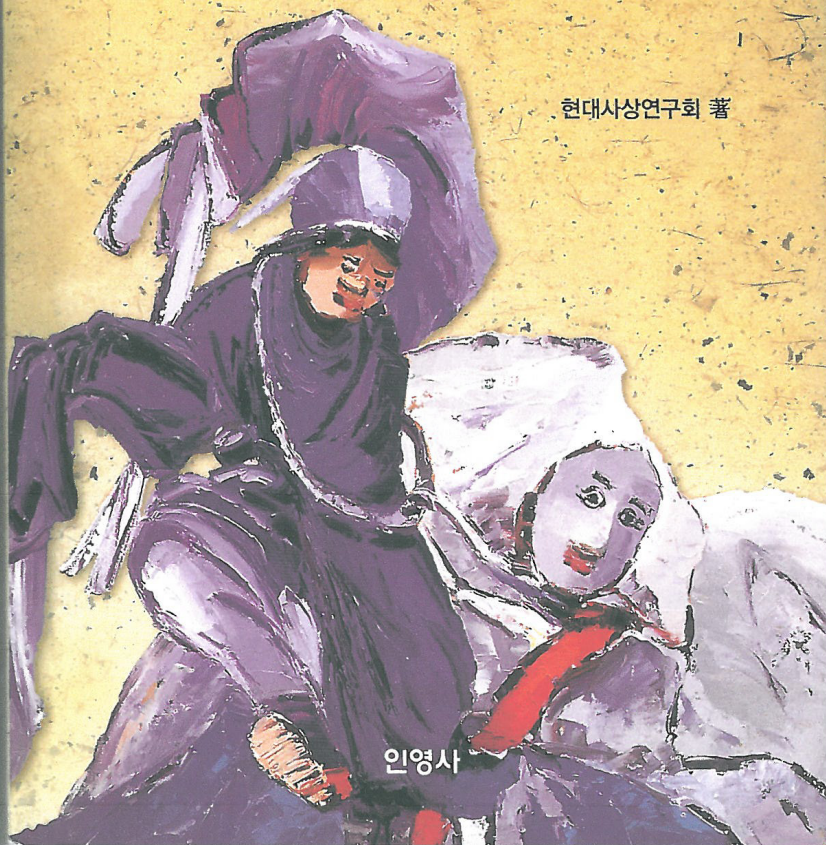
김 전 총리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수장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긴다"며 "대공수사권을 검찰에 넘기고 정보기관의 기본 임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보부는 미국의 CIA(중앙정보국)를 모델로 만들었다. 미국은 정보를 담당하는 CIA와 수사를 맡는 FBI(연방수사국)가 갈라져 있다. 당시 중정에 수사권을 부여한 건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규정이었다. 나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법안을 보고하면서 정권이 민간으로 이양되면 수사권도 법무부에 넘겨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고 회고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현대사상연구회 著



인영사



독일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연방정보기관통제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Kontrollüberwachungsgesetz – PKGrG)¹⁾

Kontrollüberwachungsgesetz vom 29. Juli 2009 (BGBl. I S. 2346)
2009년 7월 29일 통제위원회법(BGBI. I S. 2346)

§ 1 Kontrollrahmen

제1조 통제범위

(1) Die Bundesregierung unterliegt hinsichtlich der Tätigkeit des Bu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 des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es und des Bundesnachrichtendienstes der Kontrolle durch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 번역(가나다순): 임구철 (독국대법고 법원장 교수), 정은희 (독일 Niederrhein Hochschule 석사), 홍신기 (독일 Freiburg 대학 박사과정, 헌법 전문)

1) 통 법률은 모든 주에 소속된 정보기관이 아닌 연방차원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로 독일 기본법(헌법) 제45d조를 근거로 해서 제정하였다(Artikel 45d GG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1) Der Bundestag bestellt ein Gremium zur Kontrolle der nachrichtendienstlichen Tätigkeit des Bundes. (2)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기본법 제45조 (1) 연방의회는 연방정보기관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더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국기정보법 개혁을 위한 제안서

(1) 연방정부는 연방헌법보조장(Bu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²⁾ 군정보기관(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및 연방정보기관(Bundesnachrichtendienst)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회통제위원회의(Kontrollgremium)의 통제에 따른다.

(2) Die Rechte des Deutschen Bundestages, seiner Ausschüsse und der Kommission nach dem Artikel 10-Gesetz bleiben unberührt.

제10조 "통신·비밀·자유·채택·제한법" (Artikel 10-Gesetz,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국기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 Mitgliedschaft

제2조 구성

(1) Der Deutsche Bundestag wählt zu Beginn jeder Wahlperiode die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aus seiner Mitte.

(1) 연방의회는 매 해당 의회임기 초에 연방의원 중에서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2) Er bestimmt die Zahl der Mitglieder, die Zusammensetzung und die Arbeitsweise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2) 연방의회는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의 수, 임무 조직 및 업무 방식을 결정한다.

(3) Gewählt ist, wer die Stimmen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auf sich vereint.

(3) 위원회의 위원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다만 의전: 연방의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가 선출된다.)⁴⁾

2) 헌법보조청의 경우 독일 내의 각주도 역시 고유의 헌법보조청(La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을 보유하고 있다. 통 법은 연방소속 기관이 통제대상이다.

3) http://de.wikipedia.org/wiki/Artikel_10-Gesetz: <http://www.bundestag.de/bundestag/gremien/pkgr/einfuehrung.html> 참조.

4) 위 문장에서 독일 연방의회 구성원 다수의 목소리라는 의미가 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의정이나 그 대행자의 선출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일반 구성원 선출

(4) Scheidet ein Mitglied aus dem Deutschen Bundestag oder seiner Fraktion aus oder wird es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oder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so verliert es seine Mitgliedschaft i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 3 Absatz 3 bleibt unberührt. Für dieses Mitglied ist unverzüglich ein neues Mitglied zu wählen; das Gleiche gilt, wenn ein Mitglied aus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ausscheidet.

(4) 연방의회 의원 또는 (교섭단체)장단의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방정부 또는 의회 사무장의 원 의원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조 제3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원의 경우 기계 없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의회통제위원회의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 3 Zusammentritt

제3조 회의

(1)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tritt mindestens einmal im Vierteljahr zusammen. Es gibt sich eine Geschäftsordnung.

(1)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어도 분기별로 1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것은 국회법으로 정한다.

과 관련된 조항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의정(President)을 포함하는 문구가 나온다.

5)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7월 내각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었는데 정부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회의 수행에 참가하여 정부를 처리하고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하였고, 연방하고 있다. 황교로 유엔 사무총장을 포괄할 때 UN-Sekretär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미루어 와서 신원적인 주한 행정장부를 담당하는 자리로 판단되어 사무총장이나 서기장이라는 단어도 생각할 볼 수 있다.

<http://kerns.naver.com/entry.nhn?docId=562434&mobile&categoryId=1595>: http://de.wikipedia.org/wiki/Staatssekret%C3%A4rParlamentarische_Staatssekret.C3.A4tre 참조.

6) 일반적으로 의사규칙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개념인 'Geschäftsordnung'이 국회법(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위원회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알기 힘들다. 명확히 안 된다.

(2) Jedes Mitglied kann die Einberufung und die Unterrichtung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verlangen.

(2) 모든 의원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소집과 의회통제위원회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übt seine Tätigkeit auch über das Ende einer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hinaus so lange aus, bis der nachfolgende Deutsche Bundestag gemäß § 2 entschieden hat.

(3) 제2조에 따라서 차기 연방의회가 의회통제위원회를 새로운 구성할 때까지 의회통제위원회는 해당 연방위원회의 임기 종료 후에도 업무를 수행한다.

§ 4 Pflicht der Bundesregierung zur Unterrichtung

제4조 연방정부의 보고의무

(1) Die Bundesregierung unterrichtet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umfassend über die allgemeine Tätigkeit der in § 1 Absatz 1 genannten Behörden und über Vorgänge von besonderer Bedeutung. Auf Verla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hat die Bundesregierung auch über sonstige Vorgänge zu berichten.

(1) 연방정부는 의회통제위원회에 제1조 제1항에 정해진 관청의 일반적 직무활동 및 특별한 중요한 사안의 처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한다. 의회통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방정부는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한다.

(2) Die politische Verantwortung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in § 1 genannten Behörden bleibt unberührt.

(2) 제1조에 정해진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5 Befugnisse des Kontrollgremiums, Amtshilfe

제5조 통제위원회의 권한, 직무상의 협조

(1) Soweit sein Recht auf Kontrolle reicht, kan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von der Bundesregierung und den in § 1 genannten Behörden verlangen, Akten oder andere in amtlicher Verwahrung befindliche Schriftstücke,

gegebenfalls auch im Original, herauszugeben und in Dateien gespeicherte Daten zu übermitteln sowie Zutritt zu sämtlichen Dienststellen der in § 1 genannten Behörden zu erhalten.

(1)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제1조 제1항 제1항의 목적에 관한 권한 범위 내의 모든 공공으로 보관하는 문서를 존재하는 경우 요구할 수 있다. 원본제출 또는 가정정보의 전송 그리고 제1조에 언급된 해당 관청의 모든 근무자에 대한 출근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Es kann Angehörige der Nachrichtendienste, Mitarbeiter und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sowie Beschäftigte anderer Bundesbehörden nach Unterrichtung der Bundesregierung befragen oder von ihnen schriftliche Auskünfte einholen. Die anzuhörenden Personen sind verpflichtet, vollständige und wahrheitsgemäße Angaben zu machen.

(2) 의회통제위원회는 (제1조 제1항 제1항) 정보(정보)의 기밀성, 연방정부 공무원 및 구성원, 다른 연방기관의 직원에게 연방정부의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작성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청문대응자는 완전하고 진실하게 보고를 하거나 할 의사가 있다.

(3) Den Verla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hat die Bundesregierung unverzüglich zu entsprechen.

(3) 연방정부는 의회통제위원회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4) Gerichte und Behörden sind zur Rechts- und Amtshilfe, insbesondere zur Vorlage von Akten und Übermittlung von Daten, verpflichtet. Soweit personenbezogene Daten betroffen sind, dürfen diese nur für Zwecke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übermittelt und genutzt werden.

(4) 법원과 관청은 사법중조(법적인 협조) 및 직무상의 협조(업무, 특히 문서제출과 정보전송)에 대한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인 경우 그런 정보는 단지 의회통제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만 전송되고 이용될 수 있다.

§ 6 Umfang der Unterrichtspflicht, Verweigerung der Unterrichtung
제6조 보고의무 범위, 보고 거부

(1) Die Verpflichtung der Bundesregierung nach den §§ 4 und 5 erstreckt sich nur auf Informationen und Gegenstände, die der Verfügungsübertragung der Nachrichtendienste des Bundes unterliegen.

(1)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정보기관의 차분권에 해당되는 정보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Sowohl dies aus zwingenden Gründen des Nachrichtenzugangs oder aus Gründen des Schutzes von Persönlichkeitsrechten Dritter notwendig ist oder wenn der Kernbereich der exekutiven Eigenverantwortung betroffen ist, kann die Bundesregierung sowohl die Unterrichtung nach § 4 als auch die Brötling von Verlangen nach § 5 Absatz 1 verweigern sowie den in § 5 Absatz 2 genannten Personen untersagen, Auskunft zu erteilen. Macht die Bundesregierung von diesen Rechten Gebrauch, so hat das für den betroffenen Nachrichtendienst zuständige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 2 Absatz 1 Satz 2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 1 Absatz 1 Satz 1 des MAD-Gesetzes, § 1 Absatz 1 Satz 1 des BND-Gesetzes) dies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zu begründen.

(2) 이 정보와 대상이 정보접근과 관련된 부득이한 이유나 혹은 제3자의 인격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또는 행정 고유책임의 책임영역과 관련되는 한, 연방정부는 동법 제4조에 따른 보고와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요구(요청)를 거부할 수 있고, 제5조 제2항에서 언급된 당사자에게 정보제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연방정부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관련 정보기관에 대한 관할 있는 연방정부의 구성원(연방헌법보조장관 제2조 제1항 제2문: § 2 Absatz 1 Satz 2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군법보기관법 제2조 제1항 제1문: § 1 Absatz 1 Satz 1 des MAD-Gesetzes, 연방정보기관법 제1조 제1항 제1문: § 1 Absatz 1 Satz 1 des BND-Gesetzes)은 의회통제위원회에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7 Beauftragung eines Sachverständigen
제7조 전문가 위임

(1)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kann mit der Mehrheit von zwei Dritteln seiner Mitglieder nach Anhörung der Bundesregierung im Einzelfall einen Sachverständigen beauftragen, zur Wahrnehmung seiner Kontrollaufgaben

신의를 위해 참석할 수 있다. 동일하게 신뢰위원의 위임장, 그 제해자 및 선임된 위원은 연방에 산입 10a에 따라 의회통제위원회의 회의에 공동신의를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Die Entwurfe der jährlichen Wirtschaftspläne der Dienste werde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zur Mithberatung überwiesen. Die Bundesregierung unterrichtet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über den Vollzug der Wirtschaftspläne im Haushaltsjahr. Bei den Beratungen der Wirtschaftspläne der Dienste und deren Vollzug können die Mitglieder wechselseitig mitberatend an den Sitzungen beider Gremien teilnehmen.

(2) 정보기관의 매체 관련된 입법(보안) 예산안은 공동심의를 위하여 의회통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회계연도 내에 그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 의회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기관의 해당 예산안 심의와 그 집행에 있어서 위원은 공동심의를 위하여 양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10 Geheime Beratungen, Bewertungen, Sondervoten
제10조 비공개 심의, 평가, 특별 의사표시(소수 의견)

(1) Die Beratu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sind geheim. Die

9) Wirtschaftspläne의 개념은 여기서는 정보기관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일반예산(Haushaltsplan)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이나 가예산이나 준예산은 아니다. 이례의 문장중 번역해 보면 동어반복이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영향력이 확실히 적지 않을 경우, 연방이나 주의 운영으로부터 수반되는 보편적성" 라고 되어 있다. Der Haushaltsplan (Etat oder Budget) ist die durch das Haushaltsgesetz festgelegt. Die Haushalts- und Wirtschaftsplanung des Bundes oder Landes maßgebende Zusammenstellung aller Vorschlägen Einnahmen und Ausgaben, Verpflichtungsmöglichkeiten, Stellenplan von allen Bundes- oder Landesverwaltungen für ein oder zwei Rechnungsjahre (Art. 110 GG). Der Wirtschaftsplan ist ein Ersatzhaushaltsplan, der von Betrieben des Bundes oder des Landes aufgestellt wird, wenn ein Wirtschaften nach Einnahmen und Ausgaben des Haushaltsplans nicht zweckmäßig ist(http://verwaltungsrecht.jimdo.com/%C3%A4cher/finanzen/289-1-unterwird-der-haushalts-und-wirtschaftsplanung/). Wirtschaftspläne sind für Landesbetriebe und Regiebetriebe die Bewirtschaftungsgrundlage, wenn diese nicht nach den Einnahmen und Ausgaben eines Haushaltsplans (Kameralistik) wirtschaften(http://de.wikipedia.org/wiki/Wirtschaftsplan).

국/정원 개척을 위한 제12조

Mitglieder des Gremiums und die an den Sitzungen teilnehmenden Mitglieder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sind zur Geheimhaltung der Angelegenheiten verpflichtet, die ihnen bei ihrer Tätigkeit i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bekannt geworden sind. Dies gilt auch für die Zeit nach ihrem Ausscheiden aus beiden Gremien. Das Gleiche gilt für Angelegenheiten, die den Mitglieder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anlässlich der Teilnahme an Sitzungen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bekannt geworden sind.

(1) 의회통제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 및 연방예산법 제10조의규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신뢰위원회의 위원들은 의회통제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 비밀준수의무는 양 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상실할 후에도 동일하다. 의회 통제위원회의 위원이 연방예산법 제10조의규에 따라 신뢰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Absatz 1 gilt nicht für Bewertungen bestimmter Vorgänge, wenn eine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anwesenden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ihre vorherige Zustimmung erteilt hat. In diesem Fall ist es jedem einzelnen Mitglied des Gremiums erlaubt, eine abweichende Bewertung (Sondervotum) zu veröffentlichen.

(2) 제1항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총석의인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건에 합의된 특정 사건의 평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모든 개별 위원들은 상이한 평가(소수 의견)를 공포할 수 있다.

(3) Soweit für die Bewertung des Gremiums oder die Abgabe von Sondervoten eine Sachverhaltsdarstellung erforderlich ist, sind die Belange des Geheimnuschutzes zu beachten.

(3) 위원회의 평가 또는 소수 의견의 공개를 위해 사실관계의 설명이 필수적이라도 비밀보호에 대한 이익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 11 Unterstützung der Mitglieder durch eigene Mitarbeiter
제11조 동료들 통한 지원

(1) Die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haben das Recht, zur Unterstützung ihrer Arbeit Mitarbeiter ihrer Fraktion nach Anhörung der Bundesregierung mit Zustimmung des Kontrollgremiums zu benennen. Voraussetzung für diese Tätigkeit ist die Bruchpflichtung zum Umgang mit Verschlusssachen und die formliche Verpflichtung zur Geheimhaltung.

(1)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수행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공로 연방정부에 대한 정문 후 사당 소속 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절차는 비밀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유지 및 비밀유지의 공식적인 사각(영제)이다.

(2) Die benannte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sind beauftragt, die vom Gremium beizugehenden Akten und Dateien einzusehen und die Beratungsgegenstände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mit den Mitgliedern des Gremiums zu erörtern. Sie haben grundsätzlich keinen Zutritt zu den Sitzungen des Kontrollgremiums. Das Gremium kann im Einzelfall mit Mehrheit von zwei Dritteln seiner Mitglieder beschließen, dass Mitarbeiter der Fraktionen an bestimmten Sitzungen teilnehmen können. § 10 Absatz 1 gilt entsprechend.

(2) 지정된 동료는 위원회에 인용된 서류와 정보들에 대한 일람 및 의회통제위원회의 심의대상물 해당 위원과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회는 개별적인 경우에서 재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당 의원을 특정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은 준용된다.

§ 12 Personal- und Sachausstattung des Kontrollgremiums
제12조 의회통제위원회에 대한 인력 및 물적 설비 지원

(1)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werden zur Unterstützung im erforderlichen Umfang Beschäftigte der Bundeskanzlerverwaltung beigesteuert. Die dafür zur Verfügung zu stellende Personal- und Sachausstattung ist im Einzelplan des Deutschen Bundestages gesondert auszuweisen. Für die Beschäftigten gelten § 10 Absatz 1 und § 11 Absatz 1 Satz 2 entsprechend.

(1) 지원을 위하여 의회통제위원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인력의 사무처 직원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위하여 가능할 수 있는 인력·물적 설비는 연방의회의 개별적인 예산영역¹⁰⁾으로 별도로

국/장문서 개편을 위한 제언서

로 편성된다. 그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제2문이 준용된다.

(2) Die Aufgabe für die Beschäftigten werden im Einzelfall durch Weisungen des Gremiums - in organisatorischen Fragen und in Einzelfällen auch des Vorsitzenden - erteilt.

(2) 그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지시는 개별적인 사건의 경우 의회통제위원회의, 조직과 관련된 문제 및 긴급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한다.

(3) Nach Maßgabe dieser Weisungen ist den Beschäftigten im Rahmen der Informationsrechte des Gremiums nach § 5 Auskunft zu ihren Fragen zu erteilen sowie Einsicht in die erforderlichen Akten und Dateien zu gewähren. § 6 Absatz 2 gilt entsprechend.

(3)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그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보창구권의 범위에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필요한 서류 및 정보의 일람이 허용된다. 제6조 제2항이 준용된다.

§ 13 Berichterstattung
제13조 보고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erstattet dem Deutschen Bundestag Bericht über seine bisherige Kontrolltätigkeit; mindestens in der Mitte und am Ende jeder Wahlperiode. Dabei nimmt es auch dazu Stellung, ob die Bundesregierung gegenüber dem Gremium ihren Pflichten, insbesondere ihrer Unterrichtungspflicht zu Vorgehen von besonderer Bedeutung, nachgekommen ist.

의회통제위원회의는 최소한 매 의회임기 중간 및 종료 시에 연방의회에 이전의 통제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통제위원회의는 연방정부가 위원회에 대하여 그들의 의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 14 Gerichtliche Zuständigkeit

¹⁰⁾ <http://de.wikipedia.org/wiki/Einzelplan>

제14조 (권한) 제의 시 관할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t über Streitigkeiten zwische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und der Bundesregierung auf Antrag der Bundesregierung oder von mindestens zwei Dritteln der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 또는 최소한 의회통제위원회의 제의 위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신청으로 제1권 의회통제위원회와 연방정부 간의 분쟁에 관하여 결정한다.¹¹⁾

11) 독일의 기본법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정부와 각종 위원회 사이의 권한쟁의 당사자격을 인정하고 있다(Parteifähigkeit : Antragsberechtigt sind Oberste Bundesorgane im Sinne des Art. 93 Abs. 1 Nr. 1 GG. Dazu zählen der Bundespräsident, der Bundestag, Bundesrat und die Bundesregierung sowie die gemeinsamen Ausschüsse (Art. 93 Abs. 1 Nr. 1 GG i.V.m. § 13 Nr. 5, § 63 BVerfGG).

토 론 문 3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 (영화 ‘자백’ 감독)

국정원 개혁 토론회

김용민 / 변호사 (유우성 사건 변호인)

1. 서설

국정원을 두고 국민들은 걱정원, 국조원이라고 부르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비판은 국정원이 스스로 자초했다.

최근 국정원이 일으킨 주요 문제들을 나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대선개입, 댓글공작
- 간첩조작사건(유우성, 홍강철, 기타)
-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무단 공개

위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을 강조하여 모든 업무에 비밀, 보안의 틀을 틀어박고 있지만 정작 모든 국민들이 국정원의 범죄행위나 위법한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을 국조원(국가조작원)으로 알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검토한다.

2. 국정원의 간첩조작, 증거조작 행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³²⁾으로 알려진 사건이 국정원의 적폐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유우성은 재북화교이고 탈북하여 국내 정착해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여동생도 탈북하여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자 하였으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화교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출국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을 불법감금하고 강압수사와 회유, 협박 등을 통해 유우성과 자신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그리고 유우성을 구속 기소하였다. 그런데 여동생에 대한 불법 감금, 고문 등으로 사건이 조작된 것도 있지만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휴대폰 사진, 통화내역을 몰래 숨기고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기소를 한 것이다. 1심 재판 도중 여동생이 국정원의 감금에서 풀려나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자신이 허위자백 했음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유우성은 1심에서 9가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에서 중요 사건으로 수사했던 건이 전부 무죄가 선고되자 국정원은 매우 바쁘고 초조해졌다. 결국 중국에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범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물론 그 과정에서 검사들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서위조행위는 일부 국정원 수사관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대공수사처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사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한 증거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중국 선양 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영사인증을 위조하기까지 했다. 증거조작을 이렇게 대범하게 한 이유는 간단하다. 들키지 않을 것도 들켜도 무마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거를 조작했던 조선족 김00의 진술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한편 국정원은 위 증거조작을 위해 최소 5,000만원의 예산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증거조작이 발각되어 결국 유우성은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다.

-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위법한 감금과 수사가 간첩조작으로 이어졌다.
-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와 고문은 진화되었고 여전히 남아 있다.
- 정보수집이라는 미명하에 위법한 수사를 자행해도 통제할 수 없다. 특히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진술을 매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2) 사건 명칭을 피해자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 다만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은 너무 많아 행위자 중심 명칭으로 구분이 어려울 지경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거의 모두가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되어 수사관의 지위를 겸임하고 있어 국정원 직원의 마음먹기에 따라 정보수집과 수사행위로 나누어져 통제를 피해간다.

-정보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은 항상 충돌 할 수 있다. 밀행성과 투명성의 충돌이 존재하고, 국정원 직원의 신원이 보안사항임에 반해 수사관 으로서는 공개대상이다.

-국정원 직원은 간첩수사를 성공하면 포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사건 조작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반면, 국정원의 조작행위가 적발되어도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되었다.

이처럼 위 사건은 국정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문제의 중심에 대공수사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특히 탈북자 정보)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필요에 따라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면서 국내정치에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개혁방안

발제자의 개혁방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폐지, 이관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대공수사권 폐지, 이관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하자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의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과 전문성이고 대북정보의 독점적 보유이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국정원이다보니 탈북자 간첩을 색출하는데 국정원만큼 적극적인 기관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를 최초 조사하는 기관이 국정원이다보니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탈북자의 조사업무를 국정원이 해야 할 논리필연성은 없다. 이는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탈북자를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다른 기관(국가인권위나 통일부 등)에서 담당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인권친화적이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고 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논거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 해체 수준의 재구성을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김종훈 / 국회의원 (무소속, 울산 동구)

국정원의 폐해는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에만 해도 대선개입, 정치사찰, 간첩 조작, 헌법재판소 사찰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정원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결정된 바가 있으나 달라진 것도 해결된 것도 없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언론 인터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활동을 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앞으로는 정치사찰, 고문 조작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적 있다.

물론 이 백서 작업은 민간인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같이 진행했다. 그런데 2015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관련 뉴스를 보다가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중국 공안의 문서를 위조했다. 그런데 중국 선양에서 유우성씨의 출입기록을 위조해 준 영사관이 과거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사관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을 반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이러한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 간첩 조작에 참여했다면 이미 말 다한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국정원 과거사위는 인적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과거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미봉책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과거를 반성하고 철저히 거듭나겠다고 했던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까지 사찰하고 있다. 적당한 개혁, 몇 명의 인사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국정원은 해체하고 국가의 정보기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정보가 생명인 국제경쟁시대에 맞게 해외정보, 산업정보 관련 활동 중심의 기구로 재편하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1. 국정원의 국내정치 정보수집, 사찰 기능을 없애야 한다.
2. 해외정보 수집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3.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 처럼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보수집활동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4. 국내 정치사찰, 간첩조작 등에 개입한 인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5.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내용을 타 상임위처럼 공개하고,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예산 심의권을 실질화해서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
6. 국정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입법부인 국회 예산의 3-4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되는 것이다.
7. 독립된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감사관이 직무감찰, 회계감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8. 공익신고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내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고하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토 론 문 6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질 의 응 답

(청중들이 필기 가능하도록 노트 2-3장 채워주세요)